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3000-003841-01

농 립 축 산 식 품 부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농업법인 관리·감독체계 구축방안

2021. 12. 31.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제 출 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연구용역과제 「농업법인 관리·감독체계 구축방안」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1. 12. 31.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김 계 홍

《 참여연구진 》

연구책임자 : 장 원 규 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공동연구자 : 김 명 아 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현 대 호 선임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장 민 선 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조원 : 배 상 현 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김 소 희 인턴 (한국법제연구원)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3. 연구의 범위	2
II. 「농어업경영체법」상 농업법인제도의 의의와 과제	7
1. 「농어업경영체법」상 농업법인제도의 의의	7
2. 농업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의 현대화 구현	10
III.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조문별 정비 방안	15
1. 조합법인의 설립, 변경, 해산에 관한 신고	15
2. 조합법인의 설립등기	18
3. 조합법인의 변경등기	20
4. 조합법인의 해산등기	22
5. 조합법인의 정관 기재사항	24
6. 조합법인의 해산	25
7. 회사법인의 설립, 변경, 해산에 관한 신고	26
8. 회사법인의 설립등기	30
9. 회사법인의 변경등기	32
10. 회사법인의 해산등기	34
11. 법인의 사업범위	35
12. 정관례의 작성	38
13. 실태조사의 요청자료, 시정기간	39
14.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41
15.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57
16. 과태료의 부과기준	59
IV.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 조문별 정비 방안	63
1. 조합법인의 설립신고서와 첨부서류	63
2. 조합법인의 변경신고서와 첨부서류	67
3. 조합법인의 해산신고서와 첨부서류	68
4. 조합법인의 신고확인증 발급 및 관리	69
5.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서와 첨부서류	72
6. 농업회사법인의 변경신고서와 첨부서류	74
7. 농업회사법인의 해산신고서와 첨부서류	76

8. 농업회사법인의 신고확인증 발급 및 관리	77
9. 실태조사의 주기 및 방법	79
10. 과징금의 납부 통지 및 관리	80

V. 결 론	85
--------------	----

부 록 : 「농어업경영체법」 하위법령 개정안 비교표	87
------------------------------------	----

1. 연구의 배경

- 농지제도와 관련하여 1996년 「농지법」이 제정된 후 최근까지 농업 개방화 및 고령화에 대응하여 지속적인 농지 취득 및 소유 관련 사전 규제는 완화되어 왔음. 반면에 농지처분제도 도입 등 사후관리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정비가 이루어졌음
- 이처럼 농지 취득 및 소유에 대한 지속적인 규제 완화로 인하여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및 농지임대차가 증가함
- 급격한 도시화, 광역화, 산업화로 인하여 농지는 계속해서 감소 추세를 보임. 하지만 이와 연계되어 있는 개발 지향적인 농지 이용과 관리제도는 문제점을 많이 내포함
 - ▶ 농지가 산업단지, 공공주택단지 등 대규모 개발지로 전용되면서, 해당 개발 예정지를 중심으로 농지 투기 행태가 발생함
- 이에 대응하여 그동안 규제 완화라는 법제 연혁상 흐름과는 달리, 농지취득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2021년 8월 17일 「농지법」이 개정됨(법률 제18401호). 농지거래 규제 관련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음
 - ▶ 농업진흥지역 안에 농지의 주말 및 체험 영농목적 취득 제한
 - ▶ 농지매매, 불법 임대차 중개 및 광고행위 금지
 - ▶ 농지이용에 대한 실태조사 도입
 - ▶ 농지 관련 행정이력 정보를 은행 등에 제공
- 다른 한편 사회의 발달과 다양화에 따라 농업법인의 역할과 그 숫자가 늘어남. 농

업법인의 사회활동 및 경제활동의 참여도 대폭적으로 증대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일부 농업법인은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농지를 구입하고 이를 수십 명에게 쪼개서 파는 등 농지소유권한을 악용하여 부당이익을 얻는 사례가 발생함
- 이에 대응하여 2021년 8월 17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농어업경영체법)이 개정됨(법률 제18400호). 농업법인에 대한 규제 관련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음
 - ▶ 농업법인 설립 전 사전신고제도 도입
 - ▶ 농업법인에 대한 실태조사 강화
 - ▶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금지행위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도입
 - ▶ 농업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벌칙 도입

2.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농업법인의 농지투기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헌법상의 경자유전의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법·제도의 정비가 요구됨
- 최근 「농어업경영체법」이 개정되면서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사항들을 명확하게 설계 및 정비하여 제시하여야 함
- 이 연구는 농지의 균형성과 합리성을 도모하면서 사회전체의 편익을 증대하기 위하여 농업법인의 관리 및 감독 거버넌스 현대화를 목적으로 함

3. 연구의 범위

- 개정된 「농어업경영체법」(법률 제18400호)은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의 사전 신고제 신설, 실태조사 강화, 농업법인의 사업범위 신설,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영위 금지, 농업법인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중심으로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이 중에서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은 「농어업경영체법」이 공포된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그 이외에 개정된 규정은 법이 공포된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함(같은 법 부칙 제1조 참조)

▶ 다음의 <표>는 법률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시행 시기별로 정리한 것임

<표> 「농어업경영체법」상 시기별 위임입법 사항

시행 시기	법률 규정	시행령 위임내용	시행규칙 위임내용
법률 공포 후 9개월	제20조의2(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등기전산정보, 과세정보, 부동산거래신고정보 등 해당 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에 요청하는 정보(같은 조 제6항) • 시정기간(같은 조 제8항) 	실태조사의 주기 및 방법 등(같은 조 제1항)
	법 제33조(과태료)	과태료 부과기준(같은 조 제2항)	
법률 공포 후 1년	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신고, 변경신고, 해산신고에 관한 절차(같은 조 제3항) • 중요한 변경신고 사항(같은 조 제3항) • 출자, 정관기재사항 및 해산 등에 필요한 사항(같은 조 제7항) • 설립신고, 변경신고, 해산신고, 신고의 반려 또는 보완 등에 필요한 사항(같은 조 제7항) 	
	제16조의2(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신고확인증의 발급 및 관리)		신고확인증의 발급 및 관리(같은 조 제2항)
	제16조의3(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등기 사항 중 변경된 중요한 사항(같은 조 	

시행 시기	법률 규정	시행령 위임내용	시행규칙 위임내용
	합법인의 설립등기 등)	제2항) • 설립등기, 변경등기, 해산등기에 필요한 사항(같은 조 제4항)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 설립신고, 변경신고, 해산신고에 관한 절차(같은 조 제5항) • 중요한 변경신고 사항(같은 조 제5항) • 출자, 정관기재사항 및 해산 등에 필요한 사항(같은 조 제9항) • 설립신고, 변경신고, 해산신고, 신고의 반려 또는 보완 등에 필요한 사항(같은 조 제9항)	
	제19조의2(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신고확인증의 발급 및 관리)		신고확인증의 발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같은 조 제2항)
	제19조의3(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등기 등)	• 설립등기 사항 중 변경된 중요한 사항(같은 조 제2항) • 설립등기, 변경등기, 해산등기에 필요한 사항(같은 조 제4항)	
	제19조의4(농업회사법인 및 어업법인의 사업범위)	법인의 사업범위(같은 조 제1항)	
	제20조의4(과징금)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같은 조 제5항)	
	제20조의5(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같은	

시행 시기	법률 규정	시행령 위임내용	시행규칙 위임내용
		조 제3항)	
	제33조(과태료)	과태료 부과기준(같은 조 제3항)	

-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연구는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중심으로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과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제시함

II

「농어업경영체법」상 농업법인제도의 의의와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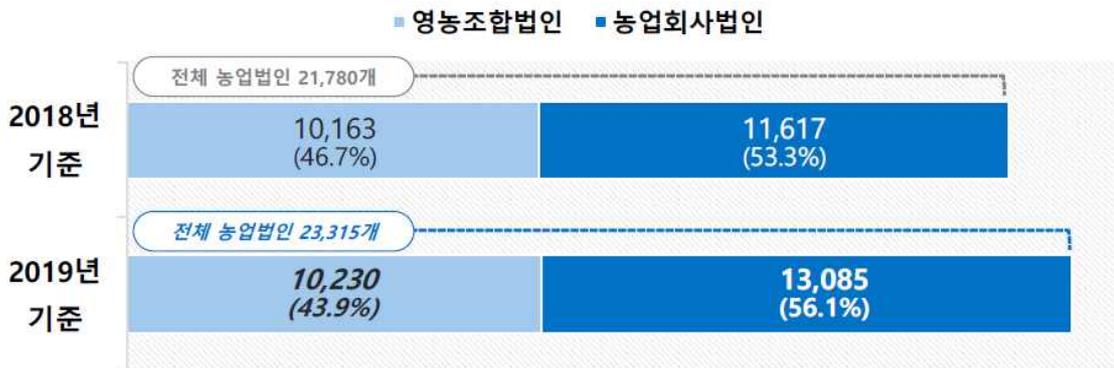
1. 「농어업경영체법」상 농업법인제도의 의의

- 법인제도의 장점은 경영위험의 분산 및 차단, 지속가능성, 세제혜택 등에 있음
 - ▶ 법인 경영 시 법인의 목적 범위에 따른 거래행위로 인한 책임은 법인이 지며, 대표이사 등 경영진은 민사상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 ▶ 법인은 경영과 소유가 분리되어 있어서 구성원의 변동이 있더라도 지속적으로 존 재하게 됨
 - ▶ 법인은 법인세법상 법인세,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세제 일부를 각각 감면 받을 수 있음
 - ▶ 시장에서 개인보다는 법인에 대한 신뢰도가 높음
- 농업법인제도는 1990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협업 및 기업가적 농업경 영을 통하여 영세농업의 구조상 한계를 극복하고, 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됨
 - ▶ 원칙적으로 농업인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으나, 농업법인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 도록 함
 - ◆ 왜냐하면 비농업인에 의한 자본출자 등을 통하여 농업의 효율성 향상과 규모화 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임
- 농업법인제도 시행 이후 농업법인의 수, 총매출액, 종사자 수 증가라는 양적 성장 을 이어오고 있음
 - ▶ 2019년 기준 농업법인 조사에 따르면, 농업법인은 23,315개로 2018년 기준(21,780 개) 대비 7% 증가.¹⁾ 이하의 그림은 2018년과 2019년 기준으로 농업법인 수를 대비

하고 있음

- ◆ 영농조합법인은 10,230개로 전체의 43.9%를 차지하고, 전년대비 0.7% 증가
- ◆ 농업회사법인은 13,085개로 전체의 56.1%를 차지하고, 전년대비 12.6% 증가

<그림> 2018년 및 2019년 농업법인의 수



○ 농업경영체 등록제

- ▶ 농업경영체 등록의 목적은 농업문제의 핵심인 구조적 개선과 농가의 소득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평준화된 지원정책에서 탈피하고, 맞춤형 농정 추진²⁾
 - ◆ 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관리
 - ◆ 농업경영체의 지원에 대한 정책 수립 및 현안에 대한 대응
 - ◆ 정책효과 검증과 신규사업 등의 발굴 및 재정사업의 투명성 제고 등에 활용
- ▶ 이하의 <표>는 지역별 농업경영체 중 등록된 농업법인의 통계를 보여주고 있음

1) 농림축산식품부/농립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019년 기준 농업법인조사 보고서, 2021, 19쪽.
2) 최선규, 농업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적 연구, 숭실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2021, 137~138쪽; 농림축산식품부/농립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법인 업무안내서, 2019, 80쪽.

<표> 2020년 기준 지역별 농업법인 현황3)

시도	경영체 수(건)	법인형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서울특별시	78	5	73
부산광역시	70	12	58
대구광역시	90	25	65
인천광역시	132	33	99
광주광역시	122	35	87
대전광역시	75	17	58
울산광역시	53	24	29
세종특별자치시	91	32	59
경기도	1558	371	1187
강원도	784	423	361
충청북도	949	445	504
충청남도	1722	919	803
전라북도	2193	1230	963
전라남도	2875	1778	1097
경상북도	1716	844	872
경상남도	1301	691	610
제주특별자치도	758	396	362
총계	14567	7280	7287

- ▶ 전체적으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분포가 대등함
- ▶ 농업회사법인 중에는 주식회사형이 가장 많으며 그밖에 유한회사형, 합명회사형의 순으로 분포하고 있음4)
- 「농어업경영체법」은 농업법인의 형태로 영농조합법인, 합명회사형 농업회사법인, 합자회사형 농업회사법인, 유한책임회사형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형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형 농업회사법인을 규정하고 있음
- ▶ 영농조합법인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마다 합의체의 의견을 거치게 됨으로 그 결정의 속도가 느리다고 할 수 있어서 신선한 작물생산 및 저장, 공동선별과 출하 등의 업종에 적합함5)

3)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조회 서비스, https://edu.agrix.go.kr/uni_docs7/biOlap/fixType.do?reportId=corp.

4) 최선규, 농업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적 연구, 숭실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2021, 89쪽.

5) 나채준/왕승혜/김수홍, 농업법인 설립 및 운영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연구용역보고서, 2017, 9쪽.

- ▶ 농업회사법인은 위험부담이 큰 편이지만, 능동적 대처가 가능하여 축산업, 전통식품 가공, 비료와 같은 농자재 관련 생산업에 적합함⁶⁾
- 농업 및 농촌의 6차산업화가 진행되고 있어서 농업법인의 사업범위 확대가 요청되고 있음
- ▶ 최근까지 관광휴양단지, 관공농원, 주말농원사업 등 농촌 관광휴양사업까지 확대되고 있음

2. 농업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의 현대화 구현

(1) 농업법인 설립 전 신고제도의 정착

-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은 농업경영체가 될 수 있고 농업경영체가 되는 농업인의 요건은 간단한 편임. 누구나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가 될 수 있음
- 「농어업경영체법」은 농업법인의 사업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 농업법인은 일반법인과 달리 법이 정한 목적사업이 정해져 있음. 따라서 정해진 목적 아래에서만 법인운영이 가능함
 - ◆ 농업법인이 농촌관광휴양사업을 영위할 경우, 토지와 시설의 임대만 가능. 분양은 금지됨
 - ▶ 농업법인은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업을 영위할 수 없음
- 「농어업경영체법」은 불법 부동산업 등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하는 농업법인을 제재할 수 있도록 농업법인 설립 전 신고제도를 도입함
 - ▶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업법인의 관리를 강화하도록 함

6) 위의 보고서, 9쪽, 12쪽.

- ▶ 농업법인의 설립 단계에서부터 농업법인 제도의 취지에 적합한 법인이 설립될 수 있도록 설립요건이나 사업범위 등을 심사하도록 함. 심사 후 수리가 되어야 신고 확인증의 발급이 가능하며, 이것이 있어야 설립등기를 할 수 있음
 - ◆ 법인의 설립 단계에서는 설립발기인들에 의한 정관의 작성, 기관의 구성으로 이루어지게 됨으로 설립행위에 대한 법적 통제가 이루어짐
- ▶ 과거 농업법인은 설립등기 후 설립등기나 변경등기의 사실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할 의무만 있었음. 설립주체와 설립요건 판단 등 관리주체가 다르고 정보전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했음
 - ◆ 등기 후 통지하지 않은 경우, 미통지 여부를 적발하기 어려워 목적 외 사업 등 설립요건 위반 상태가 지속되어 왔음
 - ◆ 설립등기 신청 시 실질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법인 설립 단계에서 사전심사의 기능이 부재하였음.
- 「농어업경영체법」은 설립신고·변경신고·해산신고에 관한 절차, 신고확인증의 발급 및 관리, 중요한 변경신고 사항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할 것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만큼, 농업법인 설립의 사전신고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의 개정을 충실하게 마련해야 함

(2) 실태조사의 강화

- 「농어업경영체법」은 농업법인에 대하여 사업 운영 현황에 대한 보고의무, 경영공시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므로 실태조사의 중요성이 부각됨
 - ▶ 방치된 장기 미운영 법인의 파악 및 정비가 필요함
 - ▶ 실태조사의 결과에 따라 특정한 농업법인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법인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함
- 농업법인에 대한 실태조사 시 농업법인의 경영상 자유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농업법인에 대한 정보 파악이 중요함. 「농어업경영체법」은 법인등기전산정보, 과세 정보, 부동산거래신고정보 등 해당 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를 규정하도록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음

- 또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농업법인이 시정하여야 할 기간, 실태조사의 주기 및 방법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으로 설계 및 정비해야 함

(3) 농업법인의 금지행위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명확화

- 「농어업경영체법」은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영위를 근원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명시함
 - ▶ 농업법인은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할 수 없음
- 「농어업경영체법」에서 규정한 과징금의 부과 기준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영위의 경우 해당 농지의 양도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내, 부동산 임대업 영위의 경우 임대료에 상당한 금액 이내임
- 과징금 제도는 현행법상 다양한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음. 그 개념을 일의적으로 정리하는 쉽지 않음.
- 「농어업경영체법」의 과징금은 그 입법취지상 농업법인이 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획득한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는 유형의 과징금 형태를 따름
 - ▶ 경제적 이익 환수형은 법 위반행위로 얻어진 경제적 이익을 확실히 환수하기 위한 유형임
 - ◆ 이는 불법이익의 환수 수단으로 인정되던 「형법」상 몰수 및 추징제도 등이 엄격한 형사절차에 의하여 운영됨으로써 경제사범의 제재에 요구되는 융통성이 제약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고안됨
 - ▶ 경제적 이익 환수형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환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함. 행정청은 이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과징금을 부과 및 징수하는 운영 주체임

- ▶ 따라서 비교적 법령에서 부과금액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집행과정에서 행정청의 재량이 폭넓게 작용할 수 있음
- 「농어업경영체법」은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특히 법 취지에 맞는 과징금의 부과 기준을 설계 및 정비하여야 함

Ⅲ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조문별 정비 방안

1. 조합법인의 설립, 변경, 해산에 관한 신고

(1) 개정의 필요성

-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 제3항 전단은 조합법인을 설립하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에서는 설립신고절차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을 규정해야 함
-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 제3항 후단은 설립신고 후 신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조합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같은 방법으로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에서는 그 신고절차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을 규정해야 함
-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 제7항에 따라 신고와 관련하여 반려 또는 보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반려 및 보완에 관한 절차를 마련해야 함

(2)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신고 등) ① 법 제16조 제3항 전단에 따라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이하 “조합법인”이라 한다)의 설립을 신고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한 설립신고서를 시장(특별자

현 행	개 정 안
	<p>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의 경우 특별자치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16조 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명칭 2. 목적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임원 6. 출자 규모 7. 납입방법 또는 산정방법 등 출자 관련 사항 8. 해산 사유 <p>③ 법 제16조 제3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한 변경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법 제16조 제3항 후단에 따라 해산신고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한 해산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⑤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6조 제7항에 따라 설립신고서, 변경신고서, 해산신고서에 적어야 할 사항이나 첨부서류의 누락이 있어 법 제16조에 따른 설립신고, 변경신고, 해산신고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20일 안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p>

현 행	개 정 안
	<p>을 요구하여야 한다.</p> <p>⑥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단, 제 4호는 변경신고와 해산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6조에 따른 설립신고·변경신고·해산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합법인의 설립·변경·해산절차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2. 정관 및 신고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3. 제5항에 따른 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서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 4. 법 제20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 등에서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법 제20조의3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3) 개정안 해설

- 농업법인 설립신고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설립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신고 시 필요한 서류와 양식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제1항)
- 농업법인이 설립된 후 신고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으로 중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제2항)
- 변경신고 시 필요한 서류와 양식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제3항)
- 해산신고 시 필요한 서류와 양식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제4항)
- 각 신고 시 기재해야 할 사항 또는 첨부서류의 누락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이 각 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 일정한 기간(20일) 안에 보완을 요구하도록 함(제5항)

- 각 신고와 관련하여 반려사유를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반려할 수 있도록 함(제6항)

2. 조합법인의 설립등기

(1) 개정의 필요성

-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의3 제4항은 조합법인의 각 등기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법인의 설립등기에 관한 절차를 마련해야 함

(2)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조합법인의 설립등기) ① 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이하 “조합법인”이라 한다)의 설립등기는 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이 신청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조합법인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및 제13호의 사항 2. 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 및 임원(이사와 감사를 두는 조합법인만 해당한다)의 주소와 성명 3. 2명 이상의 조합원이 공동으로 조합법인을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p>제9조의2(조합법인의 설립등기) ① 법 제16조의3 제1항에 따른 조합법인의 설립등기는 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이 신청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4.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총출자액</p> <p>③ 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p>1. 창립총회 의사록</p> <p>2. 정관</p> <p>3. 출자자산의 명세를 적은 서류</p> <p>4. 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임을 증명하는 서류</p> <p>5. 영농조합법인의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이 농업인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p> <p>6. 영어조합법인의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이 어업인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이하 “어업생산자단체”라 한다)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p> <p><신 설></p>	<p>③ (현행과 같음)</p> <p>1. ~ 6. (현행과 같음)</p> <p>7. <u>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신고확인증</u></p>

(3) 개정안 해설

- 근거조문이 ‘법 제16조 제3항’에서 ‘법 제16조의3 제1항’으로 개정되었으므로 반영함(제1항)
- 조합법인의 설립등기 시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한 설립신고확인증을 첨부하도록 명시함(제3항)
- ▶ 등기신청이 접수되었을 때, 등기관은 지체없이 신처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야 함(「상업등기규칙」 제54조 제1항 참조). 다만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그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제출되었는지, 제출된 서류가 형식적으

로 진정한 것인지 심사할 형식적 심사권을 가지고 있음. 등기관은 해당 등기 신청이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를 심사할 실질적인 심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

- ▶ 「상업등기법」 제26조(신청의 각하)에서는 각하 사유를 법정하고 있음. 등기관은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함
 - ◆ 각하 사유의 예: 신청정보와 첨부정보 및 이와 관련된 등기기록(폐쇄한 등기기록을 포함한다)의 각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같은 조 9호)
- ▶ 조합법인의 설립신고와 등기사항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법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 등기사항이 보정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음
- ▶ 이와 같은 내용은 조합법인의 변경등기 및 해산등기 시뿐만 아니라, 농업회사법인의 설립등기, 변경등기, 해산등기 시에도 동일함

3. 조합법인의 변경등기

(1) 개정의 필요성

-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의3 제4항은 조합법인의 각 등기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법인의 변경등기에 관한 절차를 마련해야 함
-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의3 제2항은 설립등기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등기를 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에서는 중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2)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p><u>제9조의2(조합법인의 변경등기)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조합법인을 대표하는 조합원이 신청인이 된다.</u></p> <p><u>②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변경등기를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는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u> <u>2. 법 제18조의2제5항에 따라 공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u> <u>3. 법 제18조의2제6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u> <p><u><신 설></u></p>	<p><u>제9조의3(조합법인의 변경등기) ① 법 제16조의3 제2항에 따라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조합법인을 대표하는 조합원이 신청한다.</u></p> <p><u>② 법 제16조의3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명칭</u> <u>2. 목적</u> <u>3. 사업</u> <u>4. 사무소의 소재지</u> <u>5. 임원</u> <u>6. 출자 규모</u> <u>7. 납입방법 또는 산정방법 등 출자 관련 사항</u> <u>8. 해산 사유</u> <p><u>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인이 법 제16조의3 제2항에 따라 변경등기를 하려는 경우, 변경등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는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제2항 각 호의 사항 이외의 사항은 법 제16조 제8항에서 준용하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과 법 제16조의3 제5항에서 준용하는 「상업등기법」에 따른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u> <u>2. 법 제18조의2제5항에 따라 공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u> <u>3. 법 제18조의2제6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u> <u>4. 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u>

현 행	개 정 안
	구청장이 발급한 신고확인증

(3) 개정안 해설

- 근거조문이 ‘법 제16조 제4항’에서 ‘법 제16조의3 제2항’으로 개정되었으므로 반영함(제1항)
- 설립등기 후 변경등기를 해야 할 중요한 사항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제2항)
-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조합법인의 설립등기 시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한 신고확인증 등 변경등기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제3항)
 - ▶ 특히 「농어업경영체법」에서 준용하고 있는 「민법」은 조합에 관한 기본규범이며, 「상업등기법」은 「농어업경영체법」과의 관계에서 특별법에 해당함
 - ▶ 따라서 조합법인의 변경등기 시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상 요구하고 있는 필수적인 서류만 제출하며, 「민법」 및 「상업등기법」상 필수적인 서류는 그 법에 따르도록 함

4. 조합법인의 해산등기

(1) 개정의 필요성

-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의3 제4항은 조합법인의 각 등기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법인의 해산등기에 관한 절차를 마련해야 함

(2)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u>제9조의4(조합법인의 해산등기) ① 법 제16조의3 제2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청산인이 신청한다.</u></p> <p><u>② 법 제16조의3 제2항에 따라 조합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산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총회에서 의결한 경우</u> <u>2. 조합법인이 합병된 경우</u> <u>3. 조합법인이 파산한 경우</u> <u>4. 법 제20조의3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상법」 제176조에 따른 법원의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u> <u>5. 조합원이 5명 미만이 된 후 1년 이내에 5명 이상이 되지 아니한 경우</u> <u>6. 그밖에 정관에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u> <p><u>③ 제2항에 따른 청산인이 법 제16조의3 제2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하려는 경우, 해산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u> <u>2. 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신고확인증</u>

(3) 개정안 해설

- 설립등기 및 변경등기 규정과 마찬가지로 해산등기의 신청주체를 명시하면서 청산인임을 규정함(제1항)
- 해산등기의 사유를 명확히 함(제2항)
- 해산등기 신청 시 해산신고확인증 등 필요한 서류를 명시함(제3항)

5. 조합법인의 정관 기재사항

(1) 개정의 필요성

- 현행 규정은 조합법인의 정관에 기재할 필요적 기재사항과 관련하여 상위법상 근거 규정을 명시하지 않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현행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은 동일한 취지에서 정관례 이용 권장을 조합법인과 회사법인 부문에서 각각 규율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정관례의 작성)에서 통합하여 규율하는 것이 적절함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은 삭제하고자 함

(2)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정관의 기재사항) ① 조합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 13. (생략)</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법인의 효율적 설립을 위하여 조합법인의 정관례를 정하고 이를 정관 작성의 기준으로 이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p>	<p>제12조(조합법인의 정관 기재사항) 법 제16조 제7항에 따라 조합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 13. (현행과 같음)</p> <p><삭제></p>

(3) 개정안 해설

- 조합법인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상위법의 근거를 명확히

적시함

- 조합법인에 대한 정관례 이용 권장을 동일한 취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사법인에 대한 정관례 작성 부문에서 통합하여 규율하고자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제 12조 제2항은 삭제함

6. 조합법인의 해산

(1) 개정의 필요성

- 조합법인의 해산신고제도가 실시되고 있고 해산등기의 사유에 관한 규정안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현행 조항의 정비가 요구됨

(2)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p><u>제13조(조합법인의 해산) 조합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산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총회에서 의결한 경우</u> <u>2. 조합법인이 합병된 경우</u> <u>3. 조합법인이 파산한 경우</u> <u>4.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상법」 제176조에 따른 법원의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u> <u>5. 조합원이 5명 미만인 후 1년 이내에 5명 이상이 되지 아니한 경우(협동양식업면허를 취득한 영어조합법인은 제외한다)</u> <u>6.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u> 	<p><삭 제></p>

(3) 개정안 해설

-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안)은 조합법인의 해산등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조합법인이 해산하는 사유를 위의 조항과 같은 내용으로 적시하고 있으므로 내용의 중복을 피하고자 위의 조항을 삭제하도록 함

7. 회사법인의 설립, 변경, 해산에 관한 신고

(1) 개정의 필요성

-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 제5항 전단은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에서는 설립신고절차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을 규정해야 함
-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 제5항 후단은 농업회사법인 설립신고 후 신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농업회사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같은 방법으로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에서는 그 신고절차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을 규정해야 함
-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 제9항에 따라 신고와 관련하여 반려 또는 보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반려 및 보완에 관한 절차를 마련해야 함

(2)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7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① ~ ② (생략)	제17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법 제19조 제8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의</u>	③ <u>법 제19조 제3항 및 법 제19조 제5항 전단에 따라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어</u>

현 행	개 정 안
<p>설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p> <p>1. 제1항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는 자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p> <p>2. 제18조 제1항에 따른 출자한도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p> <p>가.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하는 경우: 각 주식인수인의 성명, 주소, 인수한 주식의 수 및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해당 여부를 표시한 서류와 해당 주식인수인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p> <p>나. 주식회사 외의 형태로 설립하는 경우: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인 사원의 명단 및 해당 사원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p> <p><신 설></p> <p><신 설></p>	<p>업인과 어업생산자단체가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이하 “회사법인”이라 한다)의 설립을 신고하려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한 설립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법 제19조 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명칭 2. 목적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임원 6. 출자 규모 7. 총 출자좌수(주식수), 1좌(1주)의 금액 등 출자 관련 사항 8. 해산 사유 <p>⑤ 법 제19조 제5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p>

현 행	개 정 안
<p>④ 법 제19조 제8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어업회사법인의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p> <p>1. 제2항에 따라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는 자가 어업인 또는 어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p> <p>2. 제18조 제2항에 따른 출자한도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p> <p>가.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하는 경우: 각 주식인수인의 성명, 주소, 인수한 주식의 수 및 어업인 또는 어업생산자단체 해당 여부를 표시한 서류와 해당 주식인수인이 어업인 또는 어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p> <p>나. 주식회사 외의 형태로 설립하는 경우: 어업인 또는 어업생산자단체인 사원의 명단 및 해당 사원이 어업인 또는 어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p> <p><신 설></p> <p><신 설></p>	<p>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한 변경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⑥ 법 제19조 제5항 후단에 따라 해산신고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한 해산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⑦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9조 제9항에 따라 설립신고서, 변경신고서, 해산신고서에 적어야 할 사항이나 첨부서류의 누락이 있어 법 제19조에 따른 설립신고, 변경신고, 해산신고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20일 안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p> <p>⑧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단, 제</p>

현 행	개 정 안
	<p>4호는 <u>변경신고와 해산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u>)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9조에 따른 설립신고·변경신고·해산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p> <p>1. <u>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변경·해산절차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u></p> <p>2. <u>정관 및 신고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u></p> <p>3. <u>제8항에 따른 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서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u></p> <p>4. <u>법 제20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 등에서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이 법 제20조의3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u></p>

(3) 개정안 해설

- 농업법인 설립신고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는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신고 시 필요한 서류와 양식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제3항)
- 농업회사법인이 설립된 후 신고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으로 중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제4항)
 - ▶ 회사법인의 특성상 출자 규모와 함께 총 출자좌수(주식수), 1좌(1주)의 금액 등 출자 관련 사항을 중요한 사항으로 명시함
- 변경신고 시 필요한 서류와 양식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제5항)
- 해산신고 시 필요한 서류와 양식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제6항)
- 각 신고 시 기재해야 할 사항 또는 첨부서류의 누락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이 각 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 일정한 기간(20일) 안에 보완을 요구하도록 함(제8항)

- 각 신고와 관련하여 반려사유를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반려할 수 있도록 함(제9항)

8. 회사법인의 설립등기

(1) 개정의 필요성

-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의3 제4항은 농업회사법인의 각 등기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업회사법인의 설립등기에 관한 절차를 마련해야 함

(2)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u>제17조의2(회사법인의 설립등기) ① 법 제19조 제11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과 법 제19조의3 제5항에서 준용하는 「상업등기법」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의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제17조 제1항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는 자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u> 2. <u>제18조 제1항에 따른 출자한도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u> <p><u>가.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하는 경우: 각 주식인수인의 성명, 주소, 인수한 주식</u></p>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u>의 수 및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해당 여부를 표시한 서류와 해당 주식인수인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u></p> <p><u>나. 주식회사 외의 형태로 설립하는 경우: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인 사원의 명단 및 해당 사원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u></p> <p><u>3. 법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신고확인증</u></p> <p><u>② 법 제19조 제11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어업회사법인의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u></p> <p><u>1. 제17조 제2항에 따라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는 자가 어업인 또는 어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u></p> <p><u>2. 제18조 제2항에 따른 출자한도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u></p> <p><u>가.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하는 경우: 각 주식인수인의 성명, 주소, 인수한 주식의 수 및 어업인 또는 어업생산자단체 해당 여부를 표시한 서류와 해당 주식인수인이 어업인 또는 어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u></p> <p><u>나. 주식회사 외의 형태로 설립하는 경우: 어업인 또는 어업생산자단체인 사원의 명단 및 해당 사원이 어업인 또는 어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u></p> <p><u>3. 법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신고확인증</u></p>

(3) 개정안 해설

- 「농어업경영체법」은 회사법인에 관하여 본 법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상법」 상 회사에 관한 규정과 「상업등기법」상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같은 법 제19조 제11항, 제19조의3 제5항 참조)
- 농업회사법인의 설립등기 신청 시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규정함(「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 ▶ 출자한도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형태가 주식회사인 경우와 주식회사 이외의 경우를 구분하여 제출 서류를 명시함
 - ▶ 농업회사법인의 설립등기 시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한 신고확인증을 제출하도록 함

9. 회사법인의 변경등기

(1) 개정의 필요성

-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의3 제4항은 농업회사법인의 각 등기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업회사법인의 변경등기에 관한 절차를 마련해야 함
-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의3 제2항은 설립등기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등기를 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에서는 중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2)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u>제17조의3(회사법인의 변경등기) ① 법 제19조의3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명칭 2. 목적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임원 6. 출자 규모 7. 총 출자좌수(주식수), 1좌(1주)의 금액 등 출자 관련 사항 8. 해산 사유
<신 설>	<p><u>② 법 제19조의3 제2항에 따라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대표자(대표이사)나 업무집행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한다.</u></p>
<신 설>	<p><u>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인이 법 제19조의3 제2항에 따라 변경등기를 하려는 경우, 변경등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사항 이외의 사항은 법 제19조 제11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과 법 제19조의3 제5항에서 준용하는 「상업등기법」에 따른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신고확인증

(3) 개정안 해설

○ 설립등기 후 변경등기를 해야 할 중요한 사항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제1항)

- 농업회사법인의 변경등기 관련 신청주체를 명시함(제2항)
-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농업회사법인의 설립등기 시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한 신고확인증 등 변경등기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제3항)
 - ▶ 특히 「농어업경영체법」에서 준용하고 있는 「상법」 및 「상업등기법」은 「농어업경영체법」과의 관계에서 특별법에 해당함
 - ▶ 따라서 농업회사법인의 변경등기 시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상 요구하고 있는 필수적인 서류만 제출하며, 「상법」 및 「상업등기법」상 필수적인 서류는 그 법에 따르도록 함

10. 회사법인의 해산등기

(1) 개정의 필요성

-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의3 제4항은 농업회사법인의 각 등기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업회사법인의 해산등기에 관한 절차를 마련해야 함

(2)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u>제17조의4(회사법인의 해산등기) ① 법 제19조의3 제2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해산은 법 제19조 제11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u>
<신 설>	<u>② 법 제19조의3 제2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청산인이 신청한다.</u>
<신 설>	<u>③ 제2항에 따른 청산인이 법 제19조의3 제</u>

현 행	개 정 안
	<p>2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하려는 경우, 해산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p>1.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p> <p>2. 법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신고확인증</p>

(3) 개정안 해설

- 농업회사법인의 해산은 「농어업경영체법」의 특별법인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따르도록 규정함(제1항)
- 설립등기 및 변경등기 규정과 마찬가지로 해산등기의 신청주체를 명시하면서 청산인임을 규정함(제2항)
- 농업회사법인의 해산 시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에서 요구하는 서류 이외에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에서 요구하는 필요적 서류를 명확히 함(제3항)
 - ▶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상 필수적인 서류만 제출하며, 「상법」상 필수적인 서류의 제출은 그 법에 따르도록 함

11. 법인의 사업범위

(1) 개정의 필요성

-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의4는 농업법인의 사업범위를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함

(2)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p><u>제11조(조합법인의 사업범위) ① 영농조합법인의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 2.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3. 농산물의 공동 출하·유통·가공 및 수출 4. 농작업의 대행 5.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6. 그 밖에 영농조합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p><u>② 영어조합법인의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어업·양식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 2. 어업·양식업과 관련된 공동시설의 설치·운영 3. 수산물의 공동 출하·유통·가공 및 수출 4.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5. 그 밖에 영어조합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p><u>제19조(부대사업의 범위)</u> <신 설></p>	<p><삭 제></p> <p><삭 제></p> <p><u>제19조(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사업범위)</u></p> <p><u>① 농업법인의 주된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업의 경영 2. 농산물의 공동 출하·유통·가공 및 수출 3. 농작업의 대행 4.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농어촌관광휴양사업 5.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단,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

현 행	개 정 안
<p>① <u>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u> 1. ~ 5. (생략) <u><신설></u> <u><신설></u></p> <p>② <u>어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u> 1. ~ 4. (생략) <u><신설></u></p>	<p><u>한한다.)</u></p> <p>② <u>농업법인의 부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u> 1. ~ 5. (현행과 같음) 6. <u>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u></p> <p>③ <u>어업법인의 주된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u> 1. <u>어업·양식업의 경영</u> 2. <u>수산물의 공동 출하·유통·가공 및 수출</u> 3. <u>어작업의 대행</u> 4. 「<u>농어촌정비법</u>」 제2조 제1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u>농어촌관광휴양사업</u></p> <p>④ <u>어업법인의 부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u> 1. ~ 4. (현행과 같음) 5. <u>어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u> 6. 「<u>남시 관리 및 육성법</u>」 제2조 제4호에 따른 <u>남시터업</u> 7. 「<u>수산업법</u>」 제65조에 따른 <u>유어장 운영업</u> (단, <u>영어조합법인만 해당된다.</u>) 8. 「<u>어촌·어항법</u>」 제2조 제10호에 따른 <u>어촌어항재생사업</u>(단, <u>영어조합법인만 해당된다.</u>)</p>

(3) 개정안 해설

-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의4는 농업법인의 사업범위를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현행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합법인의 사업범위는 삭제함

- 농어업경영체법제에서 법인 설립 전 신고제도 함께 농업법인의 사업범위를 포지티브 방식으로 규제하고 있음
- 특히 농업 및 농촌의 6차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농업법인의 사업범위 확대가 요청되고 있음
- 농업법인의 사업범위를 주된 사업과 부대사업으로 구분하여 규정함(제1항 및 제2항)
 - ▶ 특히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관광휴양사업과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농촌융복합산업을 농업법인이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명시함
 - ◆ 다만 농촌융복합산업의 경우, 농업법인의 주된 사업이 되는 만큼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함
 - ▶ 현행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제11조(조합법인의 사업범위)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 사업 중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은 농업법인의 부대사업의 하나로 편성함
 - ◆ 농업법인 정관례는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조합법인 부대사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⁷⁾

12. 정관례의 작성

(1) 개정의 필요성

- 현행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은 정관례와 관련하여 조합법인에 대해서는 같은 영 제12조 제2항에서, 농업회사법인에 대해서는 같은 영 제20조에서 각각 동일한 취지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합하여 규정하는 것이 적절함

7) 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법인 업무안내서, 2019, 22쪽.

(2)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정관례의 작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u>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의 효율적 설립을 위하여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의 정관례를 정</u> 하고 이를 정관 작성의 기준으로 이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제20조(정관례의 작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u>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효율적 설립을 위하여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정관례를 정</u> 하고 이를 정관 작성의 기준으로 이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3) 개정안 해설

- 개정안은 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관례의 규정을 통합하고자 함. 다만 정관례를 정하고 이를 정관 작성의 기준으로 이용할 것을 권장하는 것은 변함이 없으나,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을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으로 문구를 변경하여 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함께 포함하도록 함

13. 실태조사의 요청자료, 시정기간

(1) 개정의 필요성

- 농업법인의 주된 사무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원활한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농업법인의 사업범위와 운영실태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임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업법인의 사업범위와 운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지원할 수 있음(「농어업경영체법」 제20조의2 제5항)
- 「농어업경영체법」 제20조의2 제6항은 농업법인의 사업범위와 운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법인등기전산정보, 과세정보, 부동산거래신고정보를 예시하면서 대통령령으로 관련된 정보를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에서

는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함

- 개정안상 시정기간 관련 근거 규정 번호의 변경과 함께 실태조사의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과 관련하여 근거 규정이 「농어업경영체법」 ‘제20조의2 제5항’에서 ‘제20조의2 제8항’으로 개정되었으므로 인용 내용을 수정해야 함

(2)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20조의2(시정기간) <u>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u>은 법 제20조의2 제5항 각 호에 대하여 6개월 이내에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제20조의2(실태조사의 요청자료) 법 제20조의2 제6항에서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u>”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상업등기법</u>」 제21조 제2항에 따른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등기전산정보자료 2. 「<u>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u>」 제24조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부동산정책 관련 자료 <p>제20조의3(시정기간) <u>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0조의2 제8항 각 호에 대하여 6개월 이내에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u></p>

(3) 개정안 해설

- 개정된 「농어업경영체법」은 국세청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농업법인의 실태조사를 강화하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실태조사 시 농업법인의 등기부, 폐쇄한 등기기록의 등기사

항, 전자증명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 ▶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상업등기법」 제21조 제2항에서 말하는 등기전산정보자료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실태조사 시 농업법인의 사업범위, 부동산업 영위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부동산 거래상황, 임대차 계약상황, 부동산 가격 동향 등 정보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 ▶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부동산정책 관련 자료 등 종합관리) 제1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정책 관련 정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시장과 구청장은 각각 누구를 말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은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개정안 제9조 제1항에서 언급하고 있으므로 삭제함
- 현행 시정기간 관련 근거 규정의 번호가 ‘제20조의2’이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제20조의3’으로 변경함. 그밖에 「농어업경영체법」 제20조의2가 개정됨에 따라 인용항을 ‘제5항’에서 ‘제8항’으로 변경함

14.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1) 개정의 필요성

- 개정된 「농어업경영체법」(법률 제18400호)은 농업법인이 농지 소유가 가능한 지위를 악용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것을 근절하고자 함.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불법영위를 제재하는 차원에서 농업법인이 부동산업 영위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과징금 제도가 도입됨
- 「농어업경영체법」 제20조의4(과징금) 제5항은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에서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과징금의 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을 신설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해야 함

(2) 개정안

현행	개정안
<p><신설></p>	<p>제24조(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① 법 제20조의4 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0조의4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어 이를 납부할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안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7일 안에 납부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이 납부된 사실을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신설></p>	<p>[별표 2] 과징금의 부과기준(제20조의4 관련)</p> <p>1. 일반기준</p> <p>가.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획득한 이익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p>

Ⅲ.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조문별 정비 방안

현 행	개 정 안		
	<u>위반행위</u>	<u>근거 법조문</u>	
	<u>과징금의 금액</u>		
	가. 농지를 활용 또는 전 용하여 「통계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 국표준산업분 류에 의한 부 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 위한 경우	법 제20조의4 제1항 제1호	해당 농지의 양도차액에 상당하는 금 액
	나. 농지를 활용 또는 전 용하여 「통계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 국표준산업분 류에 의한 부 동산 임대업 을 영위한 경 우	법 제20조의4 제1항 제1호	임대료에 상 당하는 금액
	<p>비고: 1. 농지의 양도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란 농지 취득 시와 양도 시에 각 실거래가격의 차액을 말한다. 다만 농지의 지분을 양도한 경우, 그 지분에 대한 취득 시 실거래가격은 해당 농지 취득 시의 실거래가격 총액에 양도가 이루어진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취득 과정에서 복수의 지분 거래가 있었을 경우, 해당 위반행위자가 먼저 취득한 지분부터 양도한 것으로 본다.</p> <p>2. 임대료에 상당하는 금액이란 농지</p>		

현행	개정안
	<div data-bbox="842 360 1369 483"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p>임차인이 위반행위자에게 농지의 사용 및 수익을 위하여 지급한 금액을 말한다.</p> </div> <p>2. 개별기준</p> <p><1안></p> <p>가. <u>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9조의5를 위반하여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에 대하여 해당 법인이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대상이 된 농지를 1년 이상 농업경영에 이용한 경우, 그 기간 동안 발생한 정상지가상승분을 고려해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u></p> <p>나. <u>가목에 따른 정상지가상승분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대상이 된 농지의 보유기간 각 연도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하여 산정하며, 각 연도의 정상지가상승분은 해당 연도 1월 1일 현재의 지가에 해당 연도의 정상지가변동률을 곱하여 산정한다.</u></p> <p>다. <u>연도 중에 보유 개시 시점 또는 보유 종료 시점이 속한 경우에는 월별 정상지가상승분(각 월의 정상지가상승분은 해당 월 1일 현재의 지가에 그 월의 정상지가변동률을 곱하여 산정한다)을 합하여 산정한 금액을 그 농업경영 기간 중의 정상지가상승분으로 하되, 월 중 일부 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은 그 월의 정상지가상승분을 일 단위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u></p> <p>라. <u>나목에 따른 각 연도의 정상지가상승분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의 정상지</u></p>

현 행	개 정 안																		
	<p>가변동률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한 연도별 또는 월별 평균지가변동률(해당 농지가 속하는 시·군 또는 자치구의 평균지가변동율을 말한다)로 한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각 연도의 정상지가상승분 = 매년 1월 1일 현재의 공시지가 × 해당 연도(월)의 정상지가변동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한 연도별 또는 월별 평균지가변동률)</p> </div> <p><2안></p> <p>가.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9조의5를 위반하여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에 대하여 농지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농업경영의 기간에 각 감경비율을 곱한 액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농업경영의 기간</th> <th>감경비율</th> </tr> </thead> <tbody> <tr> <td>3년 이상 4년 미만</td> <td>100분의 10</td> </tr> <tr> <td>4년 이상 5년 미만</td> <td>100분의 15</td> </tr> <tr> <td>5년 이상 6년 미만</td> <td>100분의 20</td> </tr> <tr> <td>6년 이상 7년 미만</td> <td>100분의 25</td> </tr> <tr> <td>7년 이상 8년 미만</td> <td>100분의 30</td> </tr> <tr> <td>8년 이상 9년 미만</td> <td>100분의 35</td> </tr> <tr> <td>9년 이상 10년 미만</td> <td>100분의 40</td> </tr> <tr> <td>10년 이상 11년 미만</td> <td>100분의 45</td> </tr> </tbody> </table>	농업경영의 기간	감경비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0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5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2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25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30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35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40	10년 이상 11년 미만	100분의 45
농업경영의 기간	감경비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0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5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2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25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30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35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40																		
10년 이상 11년 미만	100분의 45																		

현 행	개 정 안	
	11년 이상	100분의 50

(3) 개정안 해설

1) 과징금 제도 개요

- 과징금은 법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제재를 가함으로써 위반행위를 억제하고 법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집행되는 행정상의 조치임
- 법 위반행위의 반사회성 내지 반도덕성에 착안하여 그에 대하여 과하여지는 형사벌과는 그 취지·목적·성질·절차 등이 다르므로 형사벌을 병과하는 것이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⁸⁾
 - ▶ 형사벌과 그 성격을 달리하는 과징금에 대하여 형사벌에 적용되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사법권이나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할 수 없음
- 법위반행위자가 수회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기준에 따른 과징금이 병과될 수 있음⁹⁾
 - ▶ 수회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1개의 부과처분이 행하여질 경우, 부과할 과징금의 액수는 법령상의 각 해당 기준금액을 병과하여 산정하더라도 그 최고한도액 범위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해석됨

2) 「농어업경영체법」상 과징금 제도의 도입 배경과 특징

- 최근 일부 농업법인이 개발이익 예상 농지를 구입하고 이를 수십명에게 쪼개서 파는 등 농지 소유 권한을 악용하여 부당이익을 얻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8) 서울고등법원 2004. 6. 16. 선고 2000누4943 판결 참조.

9)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6888 판결 참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으로 처음 과징금 제도가 도입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p>제19조의5(부동산업의 금지)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은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하여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업(단, 이 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영위할 수 없다.</p> <p>제20조의4(과징금) ① 제19조의5를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하여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한 경우 2.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하여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경우 <p>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항 제1호의 경우: 해당 농지의 양도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내 2. 제1항 제2호의 경우: 임대료에 상당하는 금액 이내 <p>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해당 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체제·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p> <p>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이와 같은 입법취지상 농업법인의 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획득한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는 유형의 과징금 형태를 따르고 있음

➤ 경제적 이익 환수형은 법 위반행위로 얻어진 경제적 이익을 확실히 환수하기 위해 도입함

◆ 불법이익의 환수 수단으로 인정되오던 「형법」상 몰수 및 추징제도 등이 엄격한 형사절차에 의하여 운영됨으로써 경제사범의 제재에 요구되는 융통성이 제약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고안된 제도임

◆ 과징금은 1980년 12월 31일에 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

조에서 처음 도입된 것에 기인함. 즉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당시 경제기획원장관의 가격인하 명령에 불응한 경우, 가격인하 명령일로부터 가격인하 시까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명령위반으로 얻은 이익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함

- ▶ 경제적 이익 환수형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환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함. 행정청은 이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과징금을 부과 및 징수하는 운영 주체임. 따라서 비교적 법령에서 부과금액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집행과정에서 행정청의 재량이 폭넓게 작용할 수 있음

○ 농지의 양도차액은 기본적으로 농지의 취득 시점과 양도 시점에 각 실거래가격의 차이로 함

- ▶ 다만 농지 취득 시 지분별로 취득한 경우를 고려하여야 함으로 해당 농지 취득 시 실거래가격 총액에 양도가 이루어진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함

- ▶ 또한 농지 취득 과정에서 복수의 지분 거래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범위 반행위자가 먼저 취득한 지분부터 양도한 것으로 간주함

- ▶ 참조 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서 같은 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의 의미 / 가격 결정 등의 합의에 참가한 일부 사업자가 당해 영업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영업을 영위하지 않았으나 양수인이 영업을 양수한 이후 그 합의에 가담하여 실행행위를 한 경우, 양도인에 대한 처분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양도인의 실행행위 종료 시점(=영업양도 시점)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두6216 판결)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서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이란 가격 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터 잡은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그 합의에 터 잡은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임. 따라서 합의에 참가한 일부 사업자가 당해 영업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더 이상 그 영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다면, 양수인이 영업을 양수한 이후 그 합의에 가담하여 이에 따른 실행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양도인이 양수인의 위반행위를 교사하였다거나 또는 양

수인의 행위를 양도인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실행행위는 영업양도 시점에 종료되었고, 양도인에 대한 처분시효도 그 때로부터 진행된다고 보아야 함

▶ 참조 2 : 구 「증권거래세법」에서 정한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의미(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105621 판결)

- ◆ 구 「증권거래세법」상의 문언 내용과 증권거래세의 도입 취지, 구 증권거래세법은 주권 등의 양도시기를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규정하면서 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그 위임에 따른 구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에서 주권 등의 매매거래 확정시기를 ‘그 양도가액이 결제되는 때나 그 대금의 전부를 결제하거나 결제 받는 때 또는 당해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는 때’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증권거래세법」에서 말하는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란 소유권의 이전 그 자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대가가 지급되는 경우를 의미함

○ 유사한 입법례 : 경제적 이익 환수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제53조(과징금) ①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제38조제9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해당 토지·시설 등의 양도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u>과징금의 부과절차, 납부기한 등 세부적인 시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p>	<p>제50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산업단지 지정권자는 법 제53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위반행위에 대한 부과 기준과 과징금의 금액을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과징금 부과 대상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p>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p>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p> <p>④ 수납기관은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단지 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p>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제35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방식에 따른</u> 납품대금이나 연간 임대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5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과징금은 위반행위를 규정한 조문별로 산정하되, 그 합계가 <u>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방식에 따른</u> 납품대금이나 연간 임대료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p> <p>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부터 제55조의8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28조(과징금) ① 법 제35조에 따른 <u>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u></p> <p>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p> <p><별표 1> 과징금의 부과기준(제28조 제1항 관련)</p> <p>1. 과징금 부과 여부 결정</p> <p>과징금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부과 여부를 결정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한다.</p> <p>가. 위반행위로 인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거래질서 저해효과가 중대한 경우나. 다수의 납품업자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p> <p>다. 위반행위가 악의적으로 행해진 경우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p>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p>2. 과징금 산정기준</p> <p>과징금은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가목에 따른 산정기준에 나목에 따른 조정을 거쳐 다목에 따라 부과 과징금을 산정한다.</p> <p>가.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른 산정기준</p> <p>1) 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를 그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별로 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p> <p>2) 관련 납품대금(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납품대금으로서 대규모유통업자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상품 매입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 또는 관련 임대료(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연간 임대료로서 매장임차인이 위반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위반기간의 임대료를 1년의 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에 위반사업자의 위반금액의 비율(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에 부과기준율(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부과기준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관련 납품대금 또는 관련 임대료나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5억 원 이내에서 중대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할 수 있다.</p>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p>나.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p> <p>위반행위의 기간·횟수, 자진시정·조사협력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p> <p>다. 부과과징금 결정단계에서 고려 요인</p> <p>1) 나목에서 조정한 금액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이나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그 밖에 시장 또는 경제적 여건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부과과징금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위반사업자의 과징금 납부능력의 현저한 부족, 위반사업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의 현저한 변동 또는 지속적 악화,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경할 수 있다.</p> <p>2) 위반사업자가 채무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 상태에 있거나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반사업자가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p> <p>3) 1) 또는 2)에 따라 과징금을 감액하거나</p>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p>나 면제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p> <p>3. 그 밖에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 등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p>

- 개별기준에서는 과징금의 감정기준을 중심으로 설계함. 개정안에서 과징금의 감정기준은 2개의 안을 제시하고 있음. 제1안은 농업법인이 농지를 보유한 기간 동안 발생한 정상지가상승분을 고려함. 제2안은 농업경영의 기간 대비 감정율을 제시함
- 제1안의 정상지가상승분
 - ▶ 정상지가상승분을 고려한 사례로 「개발이익환수법」과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있음
 - ◆ 「개발이익환수법」에서는 개발이익을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함
 - 개발부담금 부과 시 부과 종료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에서 부과 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등을 뺀 금액을 부과 기준으로 함(같은 법 제8조)
 - ▶ 과징금 부과기준 개정안에서 농지의 양도차액은 농지 취득 시와 양도 시에 각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함. 하지만 「개발이익환수법」상 정상지가상승분은 기본적으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 이에 따라 감정기준으로 정상지가상승분의 고려는 제2안의 농업경영 기간 대비 감정비율에 비하여 과징금의 감정액이 적어짐
 - ◆ 과징금 부과 시 해당 농지를 1년 이상 농업경영에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정

상지가상승분을 고려해 감경할 수 있도록 함

- 정상지가상승분 = 1년 이상 해당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 동안 각 연도의 정상지가상승분의 합

- 각 연도의 정상지가상승분 = 매년 1월 1일 현재의 공시지가 x 해당 연도 (월)의 정상지가변동률(해당 농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한 시·군·구의 연도별 또는 월별 평균지가변동률)

▶ 연도 중에 농지의 보유 개시 시점 또는 보유 종료 시점이 속한 경우, 월별 정상지가상승분의 합으로 산정한 금액을 해당 농업경영 기간 중의 정상지가상승분으로 함

◆ 각 월별 정상지가상승분 = 해당 월 1일 현재의 공시지가 x 해당 월의 정상지가변동률

◆ 월 중 일부 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의 산정 = 해당 월의 정상지가상승분을 일 단위로 나누어 산정

◆ 1년 이내 농업경영 기간 동안에 해당 농지가 속하는 시·군·구의 평균지가변동을 적용

○ 제2안의 농업경영기간 대비 감경비율

▶ 1년의 간격으로 3년 이상부터 11년 이상까지 농업경영기간 제시

◆ 교환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감경기준으로 3년 이상의 농업경영기간을 기점으로 정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 3년 미만의 기간에 법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는 본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함. 따라서 이에 대하여 감경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없음

◆ 법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 5년 이상 농업경영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도 참작함(「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참조)

- ◆ 농업경영기간을 1년의 간극으로 구분한 이유
 - 연도별 지가변동률 기준 적용
 -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공시지가가 년 단위로 공시됨
 - 「소득세법」상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관련하여 주택 보유기간을 1년 단위로 급간을 두고 있음(다음의 같은 법 제95조 제2항 표1와 표2 참조)

표 1.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6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8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2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14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16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18
10년 이상 11년 미만	100분의 20
11년 이상 12년 미만	100분의 22
12년 이상 13년 미만	100분의 24
13년 이상 14년 미만	100분의 26
14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28
15년 이상	100분의 30

표 2.

보유기간	공제율	거주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2	2년 이상 3년 미만 (보유기간 3년 이상에 한정함)	100분의 8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2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6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6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20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20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24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24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2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8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32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32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36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36
10년 이상	100분의 40	10년 이상	100분의 40

- 「개발이익환수법」상 정기예금 이자율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결정 및 고시함

- 기본적으로 과세는 년 단위로 이루어짐

➤ 감경비율 제시 이유

◆ 과징금 부과 상한액에 대하여 농업경영기간 대비 일정 비율(100분의 10 ~ 100분의 50)로 최대 부과액을 조정(감경)하는 경우임

◆ 법령상 과징금의 감경 기준의 범위로 정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의 경우 과징금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거나, 과징금 산정금액에 통상 100분의 20 ~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음을 감안함

➤ ‘100분의 5’의 급간으로 감경비율 제시 이유

◆ 농지의 장기보유 및 장기 농업경영을 권장하고, 그에 따라 농업경영 기간 중 물가인상분이나 지가상승분을 상쇄시켜주기 위한 정책적 결단임(즉 이미 물가인상분이나 지가상승분을 고려한 기준임)

◆ 구간별 감경비율 제시 시 농지보유와 관련한 유사 사례를 고려하여 ‘100분의 5’라는 급간으로 구간별 비율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주택의 장기보유기간과 관련하여 공제율은 ‘100분의 6’을 기점으로 100분의 2의 급간을 두고 ‘100분의 30’까지 설계하고 있는 유사 사례(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제2항) 참조(앞의 표 1)

-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과 관련하여 공제율은 ‘100분의 12’를 기점으로 100분의 4의 급간을 두고 ‘100분의 40’까지 설계하고 있는 유사 사례(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제2항) 참조(앞의 표 2)

◆ 이와 비교하여 과징금 부과 시 부과기준율을 적용하는 이유는 법 위반행위로 인한 사회적 후생의 감소분을 반영하여야 하기 때문임

- 그러나 사회적 후생부분의 감소분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대리

변수(proxy)로서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함에 있음

15.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1) 개정의 필요성

- 「농어업경영체법」은 제20조의5(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을 신설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함

(2)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u>제20조의5(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u></p> <p>① <u>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의5 제3항에 따라 전문성 있는 기관이 종합정보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u></p> <p>② <u>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0조의5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u></p> <p>1. <u>법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신고와 관련된 사항</u></p> <p>2. <u>법 제16조의2 및 제19조의2에 따른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신고확인증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u></p> <p>3. <u>법 제20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 및 시정명령에 관련된 사항</u></p>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의3(대상 정보의 범위) (생략)	4. 법 제20조의3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의 해산 청구와 관련된 사항 5. 법 제20조의4에 따른 과징금 부과 및 징수와 관련된 사항 6. 농업법인의 농지소유와 관련된 사항 7. 그 밖에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설립·운영 현황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제20조의6(대상 정보의 범위) (현행과 같음)

(3) 개정안 해설

- 「농어업경영체법」의 위임에 따라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을 전문성 있는 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함
- 종합정보시스템과 관련된 업무(농업법인의 신고 사항, 신고확인증 발급, 실태조사 및 시정명령 사항, 과징금 부과 및 징수 사항, 농지소유 사항 등)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처리하도록 함
- 그밖에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다른 법령에서도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시행하고 있으므로 참조함
- 유사입법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세우고 시행하기 위하여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지원사업, 농어업 기술 및 농어촌 생활정보, 귀농어업인 관련 기관·단체 등에 관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귀농어업인·귀촌인의 정착에 필요한 교

<p>②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육, 주거 및 농지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귀농어업인·귀촌인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p>
<p>「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p>	<p>「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p>
<p>제21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도시형소공인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방법 및 운영기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3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시형소공인 관련 통계의 생성 및 관리 2. 도시형소공인 지원 관련 정보의 제공 3. 도시형소공인 지원사업의 신청·접수 현황 및 지원 이력의 관리 4.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16. 과태료의 부과기준

(1) 개정의 필요성

- 「농어업경영체법」의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가 삭제되었거나 법조문이 변경되었으므로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제23조 관련 별표 5의 내용을 정비해야 함

(2) 개정안

현행	개정안
<p>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생략)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p>	<p>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현행과 같음)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p>

현행					개정안									
1. 일반기준 가. ~ 나. (생략)					1. 일반기준 가. ~ 나. (현행과 같음)									
2. 개별기준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위반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위반			
		1회	2회	3회 이상				1회	2회	3회 이상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등록한 한 경우	법 제33조 제1항 제1호	25만 원	50만 원	100만 원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등록한 한 경우	법 제33조 제1항 제1호	25만 원	50만 원	100만 원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등록한 한 경우	법 제33조 제1항 제1호	25만 원	50만 원	100만 원
나. 법 제5조 제2항의 현	법 제33조 제1항 제2호	25만 원	50만 원	100만 원	나. 법 제5조 제2항의 현	법 제33조 제1항 제2호	25만 원	50만 원	100만 원	나. 법 제5조 제2항의 현	법 제33조 제1항 제2호	25만 원	50만 원	100만 원
다. 법 제16조 제5항 및 제19조 제5항에 따라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 후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33조 제4호	10만 원	25만 원	50만 원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라. 법 제20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에 불응하거나 조사를 방해한 경우	법 제33조 제2항 제1호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다. 법 제20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에 불응하거나 조사를 방해한 경우	법 제33조 제2항 제1호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다. 법 제20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에 불응하거나 조사를 방해한 경우	법 제33조 제2항 제1호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마. 법 제20조의2 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2회 이상 불응한 경우	법 제33조 제2항 제2호	3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라. 법 제20조의2 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2회 이상 불응한 경우	법 제33조 제2항 제2호	3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라. 법 제20조의2 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2회 이상 불응한 경우	법 제33조 제2항 제2호	3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바. 법 제30조를 위반하여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이 아니면서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	법 제33조 제1항 제3호	25만 원	50만 원	100만 원	마. 법 제30조를 위반하여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이 아니면서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의 명칭이나 이	법 제33조 제1항 제3호	25만 원	50만 원	100만 원	마. 법 제30조를 위반하여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이 아니면서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의 명칭이나 이	법 제33조 제1항 제3호	25만 원	50만 원	100만 원

현 행					개 정 안				
용한 경우					용한 경우				

(3) 개정안 해설

- 「농어업경영체법」의 개정으로 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이 그의 설립등기와 변경 등기 후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하는 규정이 삭제되었음. 따라서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삭제함
- 「농어업경영체법」의 개정으로 같은 ‘법 제20조의2 제5항’이 ‘법 제20조의2 제8항’으로 변경되었으므로 반영함
- 그밖에 위의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중 개별기준상 각 목차를 조정함

IV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 조문별 정비 방안

1. 조합법인의 설립신고서와 첨부서류

(1) 개정의 필요성

-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으로 조합법인의 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설립신고와 관련된 서식을 마련해야 함
-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안 제9조 제1항은 조합법인의 설립신고와 관련하여 첨부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안에서는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함

(2)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영농조합법인의 설립통지 등)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이 설립등기 사실을 통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설립등기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정관 2. 조합원(준조합원을 포함한다) 명부 3. 창립총회의사록 4.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법 제18조의2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p>	<p>제11조(영농조합법인의 설립신고서와 첨부서류) ① 법 제16조 제3항 및 영 제9조 제1항과 관련하여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신고서는 별지 제11호 서식과 같다.</p> <p>② 영 제9조 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p> <p>1. 정관 사본 2. 창립총회의사록 사본 3. 조합원(준조합원을 포함) 및 임원 명부 사본 4. 각 조합원(준조합원을 제외)이 농업인 또</p>

현 행	개 정 안
<p><u>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영농조합법인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u></p> <p>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p> <p>③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이 변경등기 사실을 통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영농조합법인 변경등기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등기 사항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2. 등기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p> <p>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p> <p>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의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영농조합법인 명부에 이를 기재하고 영농조합법인의 육성·관리에 활용하여야 한다.</p>	<p>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p> <p>5. 출자 1좌 당 금액과 조합원(준조합원을 포함)별 인수하려는 출자구좌수를 적은 서류</p> <p>6. 조합원(준조합원을 포함)별 출자자산의 명세를 적은 서류</p> <p>7. 합병 또는 분할이 있는 경우,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다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영농조합법인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p>

○ 별지 각 호의 서식 목차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p>[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0호서식] (생략)</p> <p>[별지 제11호서식] 영농조합법인 설립등기통지서 <신 설></p>	<p>[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0호서식] (현행과 같음)</p> <p>[별지 제11호서식] 영농조합법인 설립신고서</p> <p>[별지 제11호의2서식] 영농조합법인 변경신고서</p>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별지 제12호서식] 영농조합법인 변경등기통지서</p> <p><신 설></p> <p><신 설></p> <p>[별지 제13호서식] 영농조합법인 명부</p> <p>[별지 제14호서식] 영어조합법인 설립등기통지서</p> <p><신 설></p> <p><신 설></p> <p>[별지 제15호서식] 영어조합법인 변경등기통지서</p> <p><신 설></p> <p><신 설></p> <p>[별지 제16호서식] 영어조합법인 명부</p> <p>[별지 제17호서식] [농업회사법인, (합명, 합자, 유한책임, 유한, 주식)회사] 설립등기통지서</p> <p><신 설></p> <p><신 설></p> <p>[별지 제18호서식] [농업회사법인, (합명, 합자, 유한책임, 유한, 주식)회사] 변경등기통지서</p> <p><신 설></p> <p><신 설></p>	<p>고서</p> <p>[별지 제11호의3서식] 영농조합법인 해산신고서</p> <p>고서</p> <p>[별지 제12호서식] 영농조합법인 설립신고확인증</p> <p>[별지 제12호의2서식] 영농조합법인 변경신고확인증</p> <p>[별지 제12호의3서식] 영농조합법인 해산신고확인증</p> <p><삭 제></p> <p>[별지 제14호서식] 영어조합법인 설립신고서</p> <p>[별지 제14호의2서식] 영어조합법인 변경신고서</p> <p>[별지 제14호의3서식] 영어조합법인 해산신고서</p> <p>고서</p> <p>[별지 제15호서식] 영어조합법인 설립신고확인증</p> <p>[별지 제15호의2서식] 영어조합법인 변경신고확인증</p> <p>[별지 제15호의3서식] 영어조합법인 해산신고확인증</p> <p><삭 제></p> <p>[별지 제17호서식] [농업회사법인, (합명, 합자, 유한책임, 유한, 주식)회사] 설립신고서</p> <p>[별지 제17호의2서식] [농업회사법인, (합명, 합자, 유한책임, 유한, 주식)회사] 변경신고서</p> <p>[별지 제17호의3서식] [농업회사법인, (합명, 합자, 유한책임, 유한, 주식)회사] 해산신고서</p> <p>[별지 제18호서식] [농업회사법인, (합명, 합자, 유한책임, 유한, 주식)회사] 설립신고확인증</p> <p>[별지 제18호의2서식] [농업회사법인, (합명, 합자, 유한책임, 유한, 주식)회사] 변경신고확인증</p> <p>[별지 제18호의3서식] [농업회사법인, (합명,</p>

현 행	개 정 안
<p>[별지 제19호서식] 농업회사법인 명부 [별지 제20호서식] [어업회사법인, (합명, 합 자, 유한책임, 유한, 주식)회사] 설립등기통지 서 <신 설></p> <p><신 설></p>	<p>합자, 유한책임, 유한, 주식)회사] 해산신고확 인증 <삭 제></p> <p>[별지 제20호서식] [어업회사법인, (합명, 합 자, 유한책임, 유한, 주식)회사] 설립신고서</p> <p>[별지 제20호의2서식] [어업회사법인, (합명, 합자, 유한책임, 유한, 주식)회사] 변경신고서 [별지 제20호서식] [어업회사법인, (합명, 합 자, 유한책임, 유한, 주식)회사] 해산신고서</p>
<p>[별지 제21호서식] [어업회사법인, (합명, 합 자, 유한책임, 유한, 주식)회사] 변경등기통지 서 <신 설></p> <p><신 설></p>	<p>[별지 제21호서식] [어업회사법인, (합명, 합 자, 유한책임, 유한, 주식)회사] 설립신고확인 증 [별지 제21호서식] [어업회사법인, (합명, 합 자, 유한책임, 유한, 주식)회사] 변경신고확인 증 [별지 제21호의2서식] [어업회사법인, (합명, 합자, 유한책임, 유한, 주식)회사] 해산신고확 인증</p>
<p>[별지 제22호서식] 어업회사법인 명부 <신 설></p> <p>[별지 제23호서식] (생 략) ~ [별지 제31 호서식] (생 략)</p>	<p><삭 제></p> <p>[별지 제22호의2서식] 과징금 납부 통지서 [별지 제23호서식] (현행과 같음) ~ [별지 제31호서식] (현행과 같음)</p>

(3) 개정안 해설

- 조합법인의 설립신고서는 별지 제11호서식으로 신설함
- 조합법인의 설립신고 시 첨부서류로 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출자 1좌 당 금액과 조합원별 출자구좌수를 적은 서류, 조합원별 출자자산의 명세를 적은 서류 등 구체적으로 명시함

- 그밖에 별지 서식이 신설되거나 삭제됨에 따라 별지 서식 목차의 순서를 조정함

2. 조합법인의 변경신고서와 첨부서류

(1) 개정의 필요성

-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으로 조합법인의 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변경신고와 관련된 서식을 마련해야 함
-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안 제9조 제3항은 조합법인의 변경신고와 관련하여 첨부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안에서는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함

(2)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11조의2(영농조합법인의 변경신고서와 첨부서류) ① 법 제16조 제3항 및 영 제9조 제3항과 관련하여 영농조합법인의 변경신고서는 별지 11호의2 서식과 같다.</p> <p>② 영 제9조 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고한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2. 신고한 사항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법인 인감증명서 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개정안 해설

- 조합법인의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으로 신설함
- 조합법인의 변경신고 시 첨부서류로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구체적으로 명시함

3. 조합법인의 해산신고서와 첨부서류

(1) 개정의 필요성

-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으로 조합법인의 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해산신고와 관련된 서식을 마련해야 함
-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안 제9조 제3항은 조합법인의 해산신고와 관련하여 첨부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안에서는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함

(2)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u>제11조의3(영농조합법인의 해산신고서와 첨부서류) ① 법 제16조의2 제2항 및 영 제9조 제4항과 관련하여 영농조합법인의 해산신고서는 별지 제11호의3 서식과 같다.</u></p> <p><u>② 영 제9조 제4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u></p> <p>1. 해산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p>

현 행	개 정 안
	2. <u>해산 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류</u> 3. <u>법인 인감증명서</u> 4. <u>법인 등기사항증명서</u>

(3) 개정안 해설

- 조합법인의 해산신고서는 별지 제11호의3서식으로 신설함
- 조합법인의 해산신고 시 첨부서류로 해산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해산 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류 등 구체적으로 명시함

4. 조합법인의 신고확인증 발급 및 관리

(1) 개정의 필요성

-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으로 조합법인의 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신고확인증과 관련된 서식과 절차를 마련해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확인증을 발급한 후 이들에게 사실관계와 관련한 행정상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

(2)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1조의4(영농조합법인의 신고확인증 발급 및 관리) ① 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의 신고확인증은 다음 각 호의 서식과 같다.

현 행	개 정 안
	<p>1. <u>별지 제12호에 따른 설립신고확인증</u></p> <p>2. <u>별지 제12호의2에 따른 변경신고확인증</u></p> <p>3. <u>별지 제12호의3에 따른 해산신고확인증</u></p> <p>② <u>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16조 제4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즉시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u></p> <p>③ <u>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발급한 이후에 신고사항과 등기사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여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다.</u></p> <p>④ <u>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의 신고사항과 법 제16조의2에 따라 발급한 신고확인증을 법 제20조의5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 등으로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u></p>

(3) 개정안 해설

- 조합법인의 신고확인증과 관련하여 설립신고확인증은 별제 제12호로, 변경신고확인증은 별지 제12호의2로, 해산신고확인증은 별지 제12조의3호로 각각 신설함
- 시장·군수·구청장이 설립신고, 변경신고, 해산신고를 수리한 때 즉시 해당 신고확인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함
 - ▶ 수리는 타인의 행위를 유효한 행위로서 받아들이는 수동적 행정행위이므로 수리에 따른 반대급부로 신고확인증을 즉시 발급하도록 함
- 조합법인 관련 신고사항과 등기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감독하는 차원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일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 ▶ 이러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일치 여부를 즉각 또는 즉시 확인해야 하는 것은 아님. ‘즉시’ 또는 ‘즉각’이라는 표현이 없는 한 이러한 우려는 없어도 되며, 판례에서도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임
- ▶ 신고사항과 등기사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때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농업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 유사입법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p>제18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법 제39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창업진흥원을 포함한다)은 법 제4조의2제1항 및 제4조의3제2항의 사업 또는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른 창업기업의 확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의 정보주체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자등록증명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3. 휴·폐업사실증명 4. 표준재무제표증명 5. 자동차운전면허증 6. 외국인등록사실증명 7. (국세)납세증명서 8. 지방세납부확인서 9.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10. 수출신고필증 11. 4대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12. 디자인등록원부 13. 상표등록원부 14. 실용신안등록원부 15. 특허등록원부 16. 이노비즈확인서 17. 메인비즈확인서 18. 벤처기업확인서 19. 사회적기업인증서

- 20.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 2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22.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 23. 중소기업확인서

-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으로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이 신설된 것에 발맞추어 조합법인의 신고사항과 신고확인증을 종합정보시스템 등으로 보관 및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함

5.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서와 첨부서류

(1) 개정의 필요성

-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으로 농업회사법인의 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설립신고와 관련된 서식을 마련해야 함
-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안 제17조 제3항은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와 관련하여 첨부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안에서는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함

(2)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농업회사법인의 설립통지 등) ①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이 설립등기 사실을 통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농업회사법인 설립등기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정관</p>	<p>제13조(농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서와 첨부서류) ① 법 제19조 제5항 및 영 제17조 제3항과 관련하여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서는 별지 제17호 서식과 같다.</p> <p>② 영 제17조 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p>

현 행	개 정 안
<p>2. 임원 명부</p> <p>3. 설립에 따른 총회의사록(창립총회의사록 또는 발기인총회의사록)</p> <p>4.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농업회사법인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p> <p>5. 조직변경을 의결한 총회의사록(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이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농업회사법인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p> <p>③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등기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p> <p>1. 목적</p> <p>2. 상호</p> <p>3. 본점 소재지</p> <p>4.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유한·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p> <p>5. 자본금의 총액</p> <p>④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이 변경등기 사실을 통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p>	<p>1. 정관 사본</p> <p>2. 창립총회의사록 사본</p> <p>3. 출자자(주주) 및 임원 명부 사본</p> <p>4. 각 출자자가 농업인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p> <p>5. 출자(주식) 1좌(주) 당 금액과 출자자(주주)별 인수하려는 출자좌(주식)수를 적은 서류</p> <p>6. 출자자(주주)별 출자자산의 명세를 적은 서류</p> <p>7. 합병 또는 분할이 있는 경우,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p>

현 행	개 정 안
<p>제18호서식의 농업회사법인 변경등기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등기 사항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의사록</p> <p>2. 등기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p> <p>⑤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 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p> <p>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의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명부에 이를 기재하고 농업회사법인의 육성·관리에 활용하여야 한다.</p>	

(3) 개정안 해설

-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서는 별지 제17호서식으로 신설함
-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시 첨부서류로 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출자(주식) 1좌 당 금액과 출자자(주주)별 출자좌(주식)수를 적은 서류, 출자자(주주)별 출자자산의 명세를 적은 서류 등 구체적으로 명시함

6. 농업회사법인의 변경신고서와 첨부서류

(1) 개정의 필요성

-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으로 농업회사법인의 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변경신고와 관련된 서식을 마련해야 함

-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안 제17조 제2항은 조합법인의 변경신고와 관련하여 첨부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안에서는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함

(2)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13조의2(농업회사법인의 변경신고서와 첨부서류) ① 법 제19조 제5항 및 영 제17조 제5항과 관련하여 농업회사법인의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7호의2 서식과 같다.</p> <p>② 영 제17조 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고한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2. 신고한 사항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법인 인감증명서 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개정안 해설

- 농업회사법인의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으로 신설함
- 농업회사법인의 변경신고 시 첨부서류로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구체적으로 명시함

7. 농업회사법인의 해산신고서와 첨부서류

(1) 개정의 필요성

-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으로 농업회사법인의 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해산신고와 관련된 서식을 마련해야 함
-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안 제17조 제6항은 농업회사법인의 해산신고와 관련하여 첨부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안에서는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함

(2)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u>제13조의3(농업회사법인의 해산신고서와 첨부서류) ① 법 제19조 제5항 및 영 제17조 제6항과 관련하여 농업회사법인의 해산신고서는 별지 제17호의3 서식과 같다.</u></p> <p><u>② 영 제17조 제6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산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2.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류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개정안 해설

- 농업회사법인의 해산신고서는 별지 제17호의3서식으로 신설함

- 농업회사법인의 해산신고 시 첨부서류로 해산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해산 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류 등 구체적으로 명시함

8. 농업회사법인의 신고확인증 발급 및 관리

(1) 개정의 필요성

-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으로 농업회사법인의 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신고확인증과 관련된 서식과 절차를 마련해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확인증을 발급한 후 이들에게 사실관계와 관련한 행정상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

(2)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13조의4(농업회사법인의 신고확인증 발급 및 관리)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신고확인증은 다음 각 호의 서식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별지 제18호에 따른 설립신고확인증 2. 별지 제18호의2에 따른 변경신고확인증 3. 별지 제18호의3에 따른 해산신고확인증 <p>②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19조 제6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즉시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p> <p>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발급한 이후에 신고사항과 등기사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여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p>

현 행	개 정 안
	<p>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다.</p> <p>④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신고사항과 법 제19조의2에 따라 발급한 신고확인증의 보관 및 관리는 제14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3) 개정안 해설

- 농업회사법인의 신고확인증과 관련하여 설립신고확인증은 별제 제18호로, 변경신고확인증은 별지 제18호의2로, 해산신고확인증은 별지 제18조의3호로 각각 신설함
-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변경신고, 해산신고를 수리한 때 즉시 해당 신고확인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함
 - ▶ 수리는 타인의 행위를 유효한 행위로서 받아들이는 수동적 행정행위이므로 수리에 따른 반대급부로 신고확인증을 즉시 발급하도록 함
- 농업회사법인 관련 신고사항과 등기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감독하는 차원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일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 ▶ 이러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일치 여부를 즉각 또는 즉시 확인해야 하는 것은 아님. ‘즉시’ 또는 ‘즉각’이라는 표현이 없는 한 이러한 우려는 없어도 되며, 판례에서도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임
 - ▶ 신고사항과 등기사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때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농업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9. 실태조사의 주기 및 방법

(1) 개정의 필요성

- 「농어업경영체법」 제20조의2 제1항은 농업법인의 적법한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실태조사의 주기 및 방법 등을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하위법령에서는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함

(2)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14조의5(실태조사의 주기 및 방법 등) ① 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른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운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1년마다 실시한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조사기간, 대상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③ 실태조사는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한다.</p> <p>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0조의2 제5항에 따라 제공된 자료를 실태조사에 활용하여야 한다.</p> <p>⑤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실태조사를 보완하거나 특정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추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p>

(3) 개정안 해설

- 농업법인의 운영실태 등 실태조사는 1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함(제1항)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조사기간, 대상 등을 포함하여 해당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2항)
- 실태조사는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함(제3항)
- 「농어업경영체법」 제20조의2 제5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원활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업법인의 사업범위와 운영실태 확인을 위한 자료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렇게 제공된 자료를 실태조사에 활용하도록 명시함(제4항)
- 실태조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요청이나 실태조사의 보완, 특정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수시로 추가적인 실시가 가능함을 규정함(제5항)

10. 과징금의 납부 통지 및 관리

(1) 개정의 필요성

- 「농어업경영체법」 제20조의4(과징금) 제5항은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하위법령에서는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함
-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안 제20조의4(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제5항은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하위법령에서는 관련 규정을 신설해야 함

(2)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9조	제19조(과징금의 납부 통지 및 관리) ① 영 제20조의4 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 통지 는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0조의5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과징금 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 및 관 리하여야 한다.
제15조 ~ 제18조 (생 략)	제21조 ~ 제24조 (현행과 같음)
제20조 ~ 제27조 (생 략)	제25조 ~ 제32조 (현행과 같음)

(3) 개정안 해설

-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안 제20조의4(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서는 과징금의 납부 통지 관련 서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안에서 관련된 내용을 규정함
- 「농업경영체법 시행규칙」안은 과징금의 납부 통지를 위한 서식(안)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인용하여 따르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 및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때 과징금 처분대장을 갖추도록 규정하기 보다는 「농어업경영체법」 제20조의5(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에 근거하여 종합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디지털화에 대응하도록 함
- 유사입법례
 - ▶ 정보시스템에 의한 기록 및 관리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	----------------------

법률	법률 시행령
<p>제12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세우고 시행하기 위하여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지원사업, 농어업 기술 및 농어촌 생활정보, 귀농어업인 관련 기관·단체 등에 관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0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귀농어업인·귀촌인의 정착에 필요한 교육, 주거 및 농지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귀농어업인·귀촌인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p>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32조(행정처분대장 등) ①허가 또는 신고신청은 법 제29조 내지 법 제33조 또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때와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한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을 작성·보관하거나 같은 서식으로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이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p>	

▶ 처분대장에 의한 기록 및 관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50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산업단지 지정권자는 법 제53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위반행위에 대한 부과 기준과 과징금의 금액을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과징금 부과 대상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업단지 지정권자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p>	<p>제28조(과징금의 납부 통지) ① 영 제50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 통지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p> <p>② 산업단지 지정권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과징금 처분대장을 갖추어 두고,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p>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p> <p>④ 수납기관은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단지 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p>	

V

결론

- 저출산, 젊은이들의 도시 이주 등으로 농가 인구가 매년 감소하고 고령화됨. 이러한 농촌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농업법인과 같은 공동경영이 장려되고 있음
- 농업법인제도는 농업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법인에 관한 일반적인 제도일 뿐만 아니라, 농업의 권리의무주체인 법인격에 관한 제도임
 - ▶ 농업법인에게 농지소유를 허용하고 조세감면 등 혜택을 부여함
- 더욱이 오늘날 농촌자원을 복합적으로 결합하는 6차산업화에서 농업법인은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연결의 경제를 일구어나가야 필요가 커지고 있음
 - ▶ 그러나 농업법인의 외연적인 성장에 비하여 농업법인의 농지투기, 농지소유, 권한의 남용 등 농업법인의 제도적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는 만큼 현안 대응이 요구됨
 - ◆ 특히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및 농지임대차 증가, 개발 예정지를 중심으로 한 농지투기 현상 등이 발생함
- 농업법인의 운영 및 제도상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분석하여 개정된 「농어업경영체법」의 취지에 따라 본 연구의 하위법령 개정안도 위임된 사항에 맞게 구체적인 내용들을 마련하여 제시함
 - ▶ 농업법인에 주어진 다양한 혜택을 악용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면서 선제적인 관리·감독체계를 구현함
 - ▶ 농업법인의 탈법 또는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즉각적인 제재 수단과 그 기준을 마련함
 - ▶ 6차산업화에 적합한 경영형태인 농업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법제도적으로 현대화함
- 농어업경영체법제의 개정으로 지방자치시대에 농업법인 관리·감독의 효율화 및

실질화를 이룩하면서 농지 및 농업법인 관련 정책 집행의 현대화를 기대할 수 있음

- ▶ 하위법령의 개정안을 통하여 현안에 즉시성과 구체성 있게 대응하면서, 국내 농업법인 관련 정책과 제도개선에 기초자료로 활용함
- ▶ 세계화, 고령화, 식품소비 및 식생활 패턴의 변화, 귀농자 및 귀촌자의 증가, 환경·생태·치유 등 농업 및 농촌의 여건 변황 대응할 수 있도록 건강한 농업법인 생태계와 경쟁력 있는 농업법인제도를 기대함

부 록

「농어업경영체법」 하위법령 개정안 비교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현 행	개 정 안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 등) ① ~ ② (생략) ③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의 경우 특별자치시장을 말한다.	<신설>	제9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 등) ① 법 제16조 제3항 전단에 따라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이하 “조합법인”이라 한다)의 설립을 신고하려는 자는 <u>농림축산식품부령</u> 또는 <u>해양수산부령</u> 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한 설립신고	제11조(영농조합법인의 설립통지 등)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이 설립등기 사실을 통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설립등기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영농조합법인의 설립신고서와 첨부서류) ① 법 제16조 제3항 및 영 제9조 제1항과 관련하여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신고서는 별지 제11호 서식과 같다. ② 영 제9조 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 예정	현행	현행	개정안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해산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변경신고 또는 해산 신고를 하여야 한다.		<u>서를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의 경우 특별자치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관 2. 조합원(준조합원을 포함한다) 명부 3. 창립총회의사록 4.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법 제18조의2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영농조합법인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관 사본 2. 창립총회의사록 사본 3. 조합원(준조합원을 포함) 및 임원 명부 사본 4. 각 조합원(준조합원을 제외)이 농업인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5. 출자 1좌 당 금액과 조합원(준조합원을 포함)별 인수하려는 출자구좌수를 적은 서류 6. 조합원(준조합원을 포함)별 출자자산의 명세를 적은 서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 예정	현행	개정안	현행
			<p>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p> <p>③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이 변경 등기 사실을 통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영농조합법인 변경 등기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등기 사항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의사록</p> <p>2. 등기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p>	<p>7. 합병 또는 분할이 있는 경우,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다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영농조합법인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시행예정			<p>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p> <p>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의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영농조합법인 명부에 이를 기재하고 영농조합법인의 육성·관리에 활용하여야 한다.</p> <p><신설></p>	<p><부록 1></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50%;">현행</td> <td style="width: 50%;">개정안</td> </tr> </table>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 예정	현 행	현 행	개 정 안
				<p>[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0호서식] (생략) [별지 제11호서식] 영농조합법인 설립등기통지서 <신 설></p> <p>[별지 제12호서식] 영농조합법인 변경등기통지서 <신 설></p> <p>[별지 제13호서식] 영농조합법인 명부 [별지 제14호</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 예정	현 행	현 행	개 정 안
				<p>서식] 영어조 합법인 설립등 기통지서 <신 설></p> <p><신 설></p> <p>[별지 제15호 서식] 영어조 합법인 변경등 기통지서 <신 설></p> <p><신 설></p> <p>[별지 제16호 서식] 영어조 합법인 명부</p> <p>[별지 제17호 서식] [농업회 사법인, (합명, 합자, 유한책 입, 유한, 주 식)회사] 설립</p>
				<p>서식] 영어조 합법인 설립신 고서 [별지 제14호 의2서식] 영어 조합법인 변경 신고서 [별지 제14호 의3서식] 영어 조합법인 해산 신고서</p> <p>[별지 제15호 서식] 영어조 합법인 설립신 고확인증 [별지 제15호 의2서식] 영어 조합법인 변경 신고확인증 [별지 제15호 의3서식] 영어 조합법인 해산 신고확인증 <삭 제></p> <p>[별지 제17호 서식] [농업회 사법인, (합명, 합자, 유한책 입, 유한, 주 식)회사] 설립</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 예정	현 행	현 행	개 정 안
			<p>등기통지서 <신 설></p> <p><신 설></p> <p>[별지 제18호 서식] [농업회 사법인, (합명, 합자, 유한책 임, 유한, 주 식)회사] 변경 등기통지서 <신 설></p> <p><신 설></p>	<p>신고서 [별지 제17호 의2서식] [농 업 회사 법 인, (합명, 합자, 유한책임, 유 한, 주식)회사] 변경신고서 [별지 제17호 의3서식] [농 업 회사 법 인, (합명, 합자, 유한책임, 유 한, 주식)회사] 해산신고서 [별지 제18호 서식] [농업회 사법인, (합명, 합자, 유한책 임, 유한, 주 식)회사] 설립 신고확인증 [별지 제18호 의2서식] [농 업 회사 법 인, (합명, 합자, 유한책임, 유 한, 주식)회사] 변경 신고 확인 증 [별지 제18호 의3서식] [농</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 예정	현 행	개 정 안	현 행	개 정 안
				<p>업 회사 법인, (합명, 합자, 유한책임, 유 한, 주식)회사] 해산신고 확인 증 <삭 제></p> <p>[별지 제19호 서식] 농업회 사법인 명부</p> <p>[별지 제20호 서식] [어업회 사법인, (합명, 합자, 유한책 임, 유한, 주 식)회사] 설립 등기통지서 <신 설></p> <p><신 설></p> <p>[별지 제21호 서식] [어업회</p>	<p>업 회사 법인, (합명, 합자, 유한책임, 유 한, 주식)회사] 해산신고 확인 증 <삭 제></p> <p>[별지 제20호 서식] [어업회 사법인, (합명, 합자, 유한책 임, 유한, 주 식)회사] 설립 신고서</p> <p>[별지 제20호 의2서식] [어 업 회사 법인, (합명, 합자, 유한책임, 유 한, 주식)회사] 변경신고서</p> <p>[별지 제20호 서식] [어업회 사법인, (합명, 합자, 유한책 임, 유한, 주 식)회사] 해산 신고서</p> <p>[별지 제21호 서식] [어업회</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 예정	현 행	현 행	개 정 안
				<p>사법인, (합명, 합자, 유한책임, 유한, 주식)회사] 변경 등기통지서 <신 설></p> <p>[별지 제22호 서식] 어업회사법인 명부 <신 설></p> <p>[별지 제23호 서식] (생 략) ~ [별지 제31호서식] (생 략)</p>
				<p>사법인, (합명, 합자, 유한책임, 유한, 주식)회사] 설립 신고확인증 [별지 제21호 서식] [어업회사법인, (합명, 합자, 유한책임, 유한, 주식)회사] 변경 신고확인증 [별지 제21호 의2서식] [어업회사법인, (합명, 합자, 유한책임, 유한, 주식)회사] 해산신고 확인증 <삭 제></p> <p>[별지 제22호 의2서식] 과징금 납부 통지서</p> <p>[별지 제23호 서식] (현행과 같음) ~ [별지 제31호서식] (현행과 같음)</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시행 예정		<p><u>② 법 제16조 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명칭</u> <u>2. 목적</u> <u>3. 사업</u> <u>4. 사무소의 소재지</u> <u>5. 임원</u> <u>6. 출자 규모</u> <u>7. 납입방법 또는 산정 방법 등 출자 관련 사항</u> <u>8. 해산 사유</u> <p><u>③ 법 제16조 제3항 후</u></p>		
			<신 설>	<u>제11조의2(영농조합법인</u>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시행 예정		<p><u>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한 변경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u>의 변경신고서와 첨부서류) ① 법 제16조 제3항 및 영 제9조 제3항과 관련하여 영농조합법인의 변경신고서는 별지 11호의2 서식과 같다.</u></p> <p><u>② 영 제9조 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신고한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u> <u>2. 신고한 사항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u> <u>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u> <u>4. 법인 인감증명서</u>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시행 예정		<p>④ 법 제16조 제3항 후단에 따라 해산신고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한 해산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신설>	<p>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제11조의3(영농조합법인의 해산신고서와 첨부서류) ① 법 제16조의2 제2항 및 영 제9조 제4항과 관련하여 영농조합법인의 해산신고서는 별지 제11호의3 서식과 같다.</p> <p>② 영 제9조 제4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산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2. 해산 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류 3. 법인 인감증명서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 예정	현 행	개 정 안	현 행
④ ~ ⑥ (생 략)			<p><u><신 설></u></p>	<p><u>제11조의4(영농조합법인의 신고확인증 발급 및 관리) ① 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의 신고확인증은 다음 각 호의 서식과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별지 제12호에 따른 설립신고확인증</u> <u>2. 별지 제12호의2에 따른 변경신고확인증</u> <u>3. 별지 제12호의3에 따른 해산신고확인증</u> <p><u>②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16조 제4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즉시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u></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 예정	현행	개정안	현행
				<p>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발급한 이후에 신고사항과 등기사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여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다.</p> <p>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의 신고사항과 법 제16조의2에 따라 발급한 신고확인증을 법 제20조의5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 등으로 보관 및 관리</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 예정	현행	개정안	현행
			<p><신 설></p>	<p>하여야 한다.</p> <p>제12조(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서와 첨부서류)</p> <p>① 법 제16조 제3항 및 영 제9조 제1항과 관련하여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신고서는 별지 제14호 서식과 같다.</p> <p>② 영 제9조 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관 사본 2. 창립총회의사록 사본 3. 조합원(준조합원을 포함) 및 임원 명부 사본 4. 각 조합원(준조합원을 제외)이 농업인 또는 「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 예정	현행	개정안	현행
				<p><u>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u></p> <p>5. <u>출자 1좌 당 금액과 조합원(준조합원을 포함) 별 인수하려는 출자구좌수를 적은 서류</u></p> <p>6. <u>조합원(준조합원을 포함)별 출자자산의 명세를 적은 서류</u></p> <p>7. <u>합병 또는 분할이 있는 경우,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다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u></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 예정	현행	개정안	현행
			<p><신 설></p>	<p>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해 설립되는 영어조합법인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p> <p>제12조의2(영어조합법인의 변경신고서와 첨부서류) ① 법 제16조 제3항 및 영 제9조 제3항과 관련하여 영어조합법인의 변경신고서는 별지 14호의2 서식과 같다.</p> <p>② 영 제9조 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시행 예정			<p><신 설></p>	<p>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p> <p>1. 신고한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p> <p>2. 신고한 사항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p> <p>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p> <p>4. 법인 인감증명서</p> <p>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p> <p>제12조의3(영어조합법인의 해산신고서와 첨부서류) ① 법 제16조의2 제2항 및 영 제9조 제4항과 관련하여 영농조합법인의 해산신고서는 별지 제14호의3 서식과 같다.</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시행 예정			<p><신 설></p>	<p>② 영 제9조 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산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2. 해산 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류 3. 법인 인감증명서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p>제12조의4(영어조합법인의 신고확인증 발급 및 관리) ① 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의 신고확인증은 다음 각 호의 서식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별지 제15호에 따른 설립신고확인증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 예정	현행	개정안	현행
				<p>2. <u>별지 제15호의2에 따른 변경신고확인증</u></p> <p>3. <u>별지 제15호의3에 따른 해산신고확인증</u></p> <p>② <u>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16조 제4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즉시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u></p> <p>③ <u>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발급한 이후에 신고사항과 등기사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u> <u>이때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여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u></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 예정	현 행	현 행	개 정 안
<p>⑦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출자, 정관 기재사항 및 해산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농조합법인 및 영</p>	<p><신 설></p>	<p>⑤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6조 제7항에 따라 설립신고서, 변경신고서, 해산신고서에 적어야 할 사항이나 첨부서류의 누락이 있어 법 제16조에 따른 설립신고, 변경신고, 해산신</p>	<p>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다.</p> <p>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의 신고사항과 법 제16조의2에 따라 발급한 신고확인증을 법 제20조의5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 등으로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p>어조합법인의 설립 신고, 변경신고, 해산신고, 신고의 반려 또는 보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u>고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20일 안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u></p> <p><u>⑥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단, 제4호는 변경신고와 해산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제16조에 따른 설립신고·변경신고·해산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u></p> <p><u>1. 조합법인의 설립·변경·해산절차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u></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시행 예정		<p>2. 정관 및 신고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p> <p>3. 제5항에 따른 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서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p> <p>4. 법 제20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 등에서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법 제20조의3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p>		
제16조의2(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신고확인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p>증의 발급 및 관리)</p> <p>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p>제16조의3(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등기 등)</p> <p>①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며,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p>	<p><u>제9조(조합법인의 설립등기) ① 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이하 “조합법인”이라 한다)의 설립등기는 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이 신청한다.</u></p>	<p><u>제9조의2(조합법인의 설립등기) ① 법 제16조의3 제1항에 따른 조합법인의 설립등기는 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이 신청한다.</u></p>	<p>→ 제11조의4, 제12조의4</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 예정	현행	개정안	개정안
<p>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p> <p>②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은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의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해산한 경우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변경등기 또는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조합법인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및 제13호의 사항</p> <p>2. 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 및 임원(이사와 감사를 두는 조합법인만 해당한다)의 주소와 성명</p> <p>3. 2명 이상의 조합원이 공동으로 조합법인을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p>	<p>② (현행과 같음)</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 예정	현행	개정안	현행
<p>④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등기, 변경등기, 해산등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에는 그 규정</p> <p>4.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총출자액</p> <p>③ 제1항에 따른 등기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p>1. <u>창립총회 의사록</u></p> <p>2. <u>정관</u></p> <p>3. <u>출자자산의 명세를 적은 서류</u></p> <p>4. <u>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임을 증명하는 서류</u></p> <p>5. 영농조합법인의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조합</p>	<p>③ (현행과 같음)</p> <p>1. ~ 6. (현행과 같음)</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 예정	현 행	개 정 안	현 행	개 정 안
		<p><u>원이 농업인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u></p> <p>6. <u>영어조합법인의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이 어업인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이하 “어업생산자단체”라 한다)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u></p> <p><u><신 설></u></p>	<p>7. <u>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u></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 예정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p><u>제9조의2(조합법인의 변경등기)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조합법인을 대표하는 조합원이 신청인이 된다.</u></p>	<p><u>구청장이 발급한 신고 확인증</u></p> <p><u>제9조의3(조합법인의 변경등기) ① 법 제16조의3 제2항에 따라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조합법인을 대표하는 조합원이 신청한다.</u></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 예정	현 행	개 정 안	현 행	개 정 안
		<p>② <u>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변경등기를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기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는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u></p> <p>1. <u>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u></p> <p>2. <u>법 제18조의2제5항에 따라 공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u></p> <p>3. <u>법 제18조의2제6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u></p>	<p>② <u>법 제16조의3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u></p> <p>1. <u>명칭</u></p> <p>2. <u>목적</u></p> <p>3. <u>사업</u></p> <p>4. <u>사무소의 소재지</u></p> <p>5. <u>임원</u></p> <p>6. <u>출자 규모</u></p> <p>7. <u>납입방법 또는 산정 방법 등 출자 관련 사항</u></p> <p>8. <u>해산 사유</u></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 예정	현 행	개 정 안	현 행
	<p><u>한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u></p> <p><u><신 설></u></p>	<p>③ <u>제2항에 따른 신청인이 법 제16조의3 제2항에 따라 변경등기를 하려는 경우, 변경등기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는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제2항 각 호의 사항 이외의 사항은 법 제16조 제8항에서 준용하는 「민법</u></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 예정	현 행	개 정 안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 중 조합에 관한 규정과 법 제16조의3 제5항에서 준용하는 「상업등기법」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18조의2제5항에 따라 공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법 제18조의2제6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법 제16조의2 제1항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 예정	현 행	개 정 안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경우</p> <p>4. 법 제20조의3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상법」 제176조에 따른 법원의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p> <p>5. 조합원이 5명 미만인 후 1년 이내에 5명 이상이 되지 아니한 경우</p> <p>6. 그밖에 정관에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p> <p>③ 제2항에 따른 청산인이 법 제16조의3 제2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하려는 경우, 해산등기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 예정	현행	개정안	개정안
		<p>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p>1. <u>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u></p> <p>2. <u>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신고확인증</u></p> <p>제12조(정관의 기재사항) ① 조합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 13. (생략)</p> <p>② <u>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u></p>	<p>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p>1. <u>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u></p> <p>2. <u>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신고확인증</u></p> <p>제12조(조합법인의 정관 기재사항) <u>법 제16조 제7항에 따라</u> 조합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 13. (현행과 같음)</p> <p><삭제></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 예정	현 행	개 정 안	현 행	개 정 안
	<p><u>조합법인의 효율적 설립을 위하여 조합법인의 정관례를 정하고 이를 정관 작성의 기준으로 이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u></p> <p><u>제13조(조합법인의 해산) 조합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산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총회에서 의결한 경우</u> <u>2. 조합법인이 합병된 경우</u> <u>3. 조합법인이 파산한 경우</u> <u>4.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상</u> 	<p><u><삭 제></u></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 예정	현행	개정안	현행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수산업의 경영이나 수산물의 유통가	<p><u>법」 제176조에 따른 법원의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u></p> <p><u>5. 조합원이 5명 미만인 후 1년 이내에 5명 이상이 되지 아니한 경우(협동양식업면허를 취득한 영어조합법인은 제외한다)</u></p> <p><u>6.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u></p> <p>제17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① ~ ② (생략)</p>	제17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 예정	현 행	개 정 안	현 행
<p>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p>	<p>③ 법 제19조 제8항에 서 준용하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의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p> <p>1. 제1항에 따라 농업회</p>	<p>③ 법 제19조 제3항 및 제5항 전단에 따라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어업인과 어업생산자단체가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이하 “회사법인”이라 한다)의 설립을 신고하려는 경우, 농림축산식품</p>	<p>제13조(농업회사법인의 설립통지 등) ① 법 제19조 제5항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이 설립등기 사실을 통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농업회사법인 설립등기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p>	<p>제13조(농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서와 첨부서류) ① 법 제19조 제5항 및 영 제17조 제3항과 관련하여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p> <p>② 영 제17조 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 예정	현 행	현 행	개 정 안
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해산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p><u>사법인을 설립하려는 자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u></p> <p>2. 제18조 제1항에 따른 출자한도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p> <p>가.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하는 경우: 각 주식인수인의 성명, 주소, 인수한 주식의 수 및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해당 여부를 표시한 서류와 해당 주식인수인이 농업인 또는</p>	<p>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한 <u>설립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u></p>	<p>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관 2. 임원 명부 3. 설립에 따른 총회의사록 (창립총회의사록 또는 발기인총회의사록) 4.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농업회사법인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5. 조직변경을 의결한 총회의사록(법 제18조제1항 	<p>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관 사본 2. 창립총회의사록 사본 3. 출자자(주주) 및 임원 명부 사본 4. 각 출자자가 농업인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5. 출자(주식) 1좌(주) 당 금액과 출자자(주주)별 인수하려는 출자좌(주식)수를 적은 서류 6. 출자자(주주)별 출자자 산의 명세를 적은 서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 예정	현 행	개 정 안	현 행	개 정 안
		<p><u>농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u></p> <p>나. <u>주식회사 외의 형태로 설립하는 경우: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인 사원의 명단 및 해당 사원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u></p>		<p><u>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이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농업회사법인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u></p> <p>② <u>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u></p> <p>③ <u>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이 다음 각</u></p>	<p><u>7. 합병 또는 분할이 있는 경우,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u></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 예정	현행	개정안	현행
			<p><u>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등기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u></p> <p><u>1. 목적</u></p> <p><u>2. 상호</u></p> <p><u>3. 본점 소재지</u></p> <p><u>4.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 (유한·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u></p> <p><u>5. 자본금의 총액</u></p> <p><u>④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이 변경등기 사실을 통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농업회사법인 변경등기통지</u></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시행예정			<p>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u>등기 사항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의사록</u></p> <p>2. <u>등기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u></p> <p>⑤ <u>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u></p> <p>⑥ <u>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의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 사실을 통</u></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 예정	현 행	개 정 안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④ 법 제19조 제5항 후 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명칭</u> <u>2. 목적</u> <u>3. 사업</u> <u>4. 사무소의 소재지</u> 	<p><u>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 19호서식에 의한 농업회사 법인 명부에 이를 기재하고 농업회사법인의 육성·관리에 활용하여야 한다.</u></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 예정	현 행	개 정 안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안
	<신 설>	5. 임원 6. 출자 규모 7. 총 출자좌수(주식수), 1좌(1주)의 금액 등 출자 관련 사항 8. 해산 사유	<신 설>	⑤ 법 제19조 제5항 후 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 식품부령 또는 해양수 산부령으로 정하는 서 류를 첨부한 변경신고 서를 시장·군수·구청	제13조의2(농업회사법인 의 변경신고서와 첨부서 류) ① 법 제19조 제5항 및 영 제17조 제5항과 관 련하여 농업회사법인의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7 호의2 서식과 같다.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p>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설립신고, 변경신고 또</p>	<p>④ 법 제19조 제8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어업회사법인의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에</p>	<p>⑥ 법 제19조 제5항 후단에 따라 해산신고를 하려는 자는 <u>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u>으로 정하는 서</p>	<p><신설></p>	<p>② 영 제17조 제2항에서 “<u>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u>”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고한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2. 신고한 사항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법인 인감증명서 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p>제13조의3(농업회사법인의 해산신고서와 첨부서류) ① 법 제19조 제5항 및 영 제17조 제6항과 관련하여 농업회사법인의</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 예정	현 행	개 정 안	현 행
<p>는 해산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설립 신고수리, 변경신고수리, 해산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p> <p>1. 제2항에 따라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는 자가 어업인 또는 어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p> <p>2. 제18조 제2항에 따른 출자한도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p> <p>가.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하는 경우: 각 주식인수인의 성명, 주소, 인수한 주식의 수 및 어업인 또</p>	<p>류를 첨부한 해산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현 행</p>	<p>해산신고서는 별지 제17호의3 서식과 같다.</p> <p>② 영 제17조 제6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p> <p>1. 해산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p> <p>2.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류</p> <p>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 예정	현 행	현 행	개 정 안
		<p><u>는 어업생산자단체</u> <u>해당 여부를 표시한</u> <u>서류와 해당 주식인</u> <u>수인이 어업인 또는</u> <u>어업생산자단체임을</u> <u>확인할 수 있는 서</u> <u>류</u></p> <p><u>나. 주식회사 외의 형</u> <u>태로 설립하는 경</u> <u>우: 어업인 또는 어</u> <u>업생산자단체인 사</u> <u>원의 명단 및 해당</u> <u>사원이 어업인 또는</u> <u>어업생산자단체임을</u> <u>확인할 수 있는 서</u> <u>류</u></p>		<p><u>제13조의4(농업회사법인</u> <u>의 신고확인증 발급 및</u></p>

<신 설>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시행 예정				<p>관리)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신고확인증은 다음 각 호의 서식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별지 제18호에 따른 설립신고확인증 2. 별지 제18호의2에 따른 변경신고확인증 3. 별지 제18호의3에 따른 해산신고확인증 <p>②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19조 제6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즉시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p> <p>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발급한 이후에 신고사</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 예정	현 행	현 행	개 정 안
			<p>제14조(어업회사법인의 설립통지 등) ① 법 제19조 제5항에 따라 어업회사법인이 설립등기 사실을 통</p>	<p><u>항과 등기사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여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다.</u></p> <p><u>④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신고사항과 법 제19조의2에 따라 발급한 신고확인증의 보관 및 관리는 제14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u></p> <p><u>제14조(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서와 첨부서류) ① 법 제19조 제5항 및 영 제17조 제3항과 관련</u></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 예정	현행	개정안	현행
			<p><u>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어업회사법인 설립등기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관 2. 임원 명부 3. 설립에 따른 총회의사록 (창립총회의사록 또는 발기인총회의사록) 4.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어업회사법인이 승계하 	<p><u>하여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u></p> <p>② 영 제17조 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관 사본 2. 창립총회의사록 사본 3. 출자자(주주) 및 임원 명부 사본 4. 각 출자자가 어업인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5. 출자(주식) 1좌(주) 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 예정	현행	개정안	현행
			<p><u>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u></p> <p>5. <u>조직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영어조합법인이 어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어업회사법인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u></p> <p>② <u>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u></p>	<p><u>금액과 출자자(주주)별 인수하려는 출자좌(주식)수를 적은 서류</u></p> <p>6. <u>출자자(주주)별 출자자산의 명세를 적은 서류</u></p> <p>7. <u>합병 또는 분할이 있는 경우,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u></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시행예정			<p><u>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u></p> <p><u>③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어업회사법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등기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u></p> <p><u>1. 목적</u></p> <p><u>2. 상호</u></p> <p><u>3. 본점 소재지</u></p> <p><u>4.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 (유한·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u></p> <p><u>5. 자본금의 총액</u></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 예정	현행	개정안	현행
			<p>④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어업회사법인이 변경등기 사실을 통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어업회사법인 변경등기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등기 사항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의사록</p> <p>2. 등기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p> <p>⑤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시행 예정			<p>여야 한다.</p> <p>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어업회사법인의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 어업회사법인 명부에 이를 기재하고 어업회사법인의 육성·관리에 활용하여야 한다.</p> <p><신 설></p>	<p>제14조의2(어업회사법인의 변경신고서와 첨부서류) ① 법 제19조 제5항 및 영 제17조 제4항과 관련하여 어업회사법인의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20호의2 서식과 같다.</p> <p>② 영 제17조 제2항에서</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시행예정			<p><신설></p>	<p>“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고한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2. 신고한 사항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법인 인감증명서 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p>제14조의3(어업회사법인의 해산신고서와 첨부서류) ① 법 제19조 제5항 및 영 제17조 제6항과 관련하여 어업회사법인의 해산신고서는 별지 제20</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시행예정			<p><u><신설></u></p>	<p><u>호의3 서식과 같다.</u></p> <p><u>② 영 제17조 제6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해산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u> <u>2. 해산 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류</u> <u>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제14조의3(어업회사법인의 신고확인증 발급 및 관리)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의 신고확인증은 다음 각 호의 서식과 같다.</u>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별지 제21호에 따른 설립신고확인증</u>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 예정	현행	개정안	현행
				<p>2. <u>별지 제21호의2에 따른 변경신고확인증</u></p> <p>3. <u>별지 제21호의3에 따른 해산신고확인증</u></p> <p>② <u>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19조 제6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즉시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u></p> <p>③ <u>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발급한 이후에 신고사항과 등기사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u> <u>이때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여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u></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 예정	현행	현행	개정안
	<p>⑦ ~ ⑧ (현행과 같음)</p> <p>⑨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출자, 정관 기재사항 및 해산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5항부터 제8항까지에서</p>			<p><u>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다.</u></p> <p><u>④ 법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의 신고사항과 법 제19조의2에 따라 발급한 신고확인증의 보관 및 관리는 제14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u></p>
		<p><u>⑧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9조 제9항에 따라 설립신고서, 변경신고서, 해산신고서에 적어야 할 사항이나 첨부서류의 누락이 있어 법 제19조에 따른 설립</u></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p>규정한 사항 외에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변경신고, 해산신고, 신고의 반려 또는 보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u>신고, 변경신고, 해산신고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20일 안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u></p> <p>⑨ <u>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단, 제4호는 변경신고와 해산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9조에 따른 설립신</u></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시행 예정		<p><u>고·변경신고·해산신고</u>를 반려할 수 있다.</p> <p>1. <u>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변경·해산절차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u></p> <p>2. <u>정관 및 신고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u></p> <p>3. <u>제8항에 따른 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서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u></p> <p>4. <u>법 제20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 등에서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u></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 예정	현행	현행	개정안
<p>⑩·⑪ (현행 제7항 및 제8항과 같음) 제19조의2(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신고확인증의 발급 및 관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9조에 따른 설립신고,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수리한 경우(같은 조</p>		<p><u>이 법 제20조의3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u></p>		<p>→ 제13조의4, 제14조의4</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p>제7항에 따라 설립신고,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확인증의 발급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p>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p>제19조의3(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등기 등) ①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은 법인으로 하며,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p>	<p><신설></p>	<p>제17조의2(회사법인의 설립등기) ① 법 제19조 제11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과 법 제19조의3 제5항에서 준용하는 「상업등기법」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의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p> <p>1. 제17조 제1항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는 자가 농업인</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p>성립한다.</p> <p>②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은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의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해산한 경우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일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변경등기 또는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p>		<p><u>또는 농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u></p> <p>2. 제18조 제1항에 따른 <u>출자한도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u></p> <p>가. <u>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하는 경우: 각 주식인수인의 성명, 주소, 인수한 주식의 수 및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해당 여부를 표시한 서류와 해당 주식인수인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임을</u></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p>다.</p> <p>③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제2항에 따른 변경등기 또는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야 한다.</p> <p>④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등기, 변경등기, 해산등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u>확인할 수 있는 서류</u></p> <p><u>나. 주식회사 외의 형태로 설립하는 경우: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인 사원의 명단 및 해당 사원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u></p> <p><u>3. 법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신고확인증</u></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p>⑤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업등기법」을 준용한다.</p>	<p><신설></p>	<p>② 법 제19조 제11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과 법 제19조의3 제5항에서 준용하는 「상업등기법」에 따라 어업회사법인의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 예정	현 행	개 정 안	현 행	개 정 안
		<p>1. 제17조 제2항에 따라 어업회사법인을 설립 하려는 자가 어업인 또는 어업생산자단체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p> <p>2. 제18조 제2항에 따른 출자한도 준수 여부 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p> <p>가.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하는 경우: 각 주식인수인의 성명, 주소, 인수한 주식 의 수 및 어업인 또 는 어업생산자단체 해당 여부를 표시한</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시행 예정		<p><u>서류와 해당 주식인수인이 어업인 또는 어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u></p> <p>나. <u>주식회사 외의 형태로 설립하는 경우: 어업인 또는 어업생산자단체인 사원의 명단 및 해당 사원이 어업인 또는 어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u></p> <p>3. <u>법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신고확인증</u></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 예정	현행	개정안	현행
		<p><u><신 설></u></p> <p>제17조의3(회사법인의 변경등기) ① 법 제19조의3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명칭 2. 목적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임원 6. 출자 규모 7. 총 출자좌수(주식수), 1좌(1주)의 금액 등 출자 관련 사항 8. 해산 사유 		
		<p><u><신 설></u></p> <p>② 법 제19조의3 제2항</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 예정	현 행	개 정 안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에 따라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u>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대표자(대표이사)나 업무집행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한다.</u></p> <p>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인이 <u>법 제19조의3 제2항에 따라 변경등기를 하려는 경우, 변경등기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사항 이외의 사항은 법 제19조 제11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과 법 제19조의3</u></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 예정	현 행	개 정 안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신 설></p>	<p>제5항에서 준용하는 「<u>상업등기법</u>」에 따른다.</p> <p>1. <u>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u></p> <p>2. 법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u>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신고확인증</u></p> <p>제17조의4(회사법인의 해산등기) ① 법 제19조의3 제2항에 따른 <u>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해산은 법 제19조 제11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u></p> <p>② 법 제19조의3 제2항에 따라 <u>해산등기를 할</u></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 예정	현 행	개 정 안	현 행	개 정 안
<p>제19조의4(농업법인 및 어업법인</p>	<p><신 설></p> <p>제11조(조합법인의 사업 범위) ① 영농조합법인의 사업범위는 다음 각</p>	<p>때에는 청산인이 신청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청산인이 법 제19조의3 제2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하려는 경우, 해산등기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p>1.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p> <p>2. 법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신고확인증</p> <p><삭 제></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 예정	현 행	현 행	개 정 안
<p>의 사업범위) ① 농업법인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공동 출하·유통·가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p> <p>② 어업법인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산업의 경영, 수산물의 공동 출하·유통·가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p>	<p>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 2. 농업과 관련된 공동 이용시설의 설치·운영 3. 농산물의 공동 출하·유통·가공 및 수출 4. 농작업의 대행 5.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6. 그 밖에 영농조합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 예정	현 행	개 정 안	현 행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p>② 영어조합법인의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어업·양식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 2. 어업·양식업과 관련된 공동시설의 설치·운영 3. 수산물의 공동 출하·유통·가공 및 수출 4.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5. 그 밖에 영어조합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삭 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 예정	현 행	개 정 안	현 행	개 정 안
	제19조(부대사업의 범위) <신 설>	제19조(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사업범위) ① 농업법인의 주된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의 경영 2. 농산물의 공동 출하·유통·가공 및 수출 3. 농작업의 대행 4.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농어촌관광휴양사업 5.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농촌융복합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시행 예정	<p>① <u>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u> 1. ~ 5. (생략) <u><신설></u></p>	<p><u>산업(단, 같은 법 제 8조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u> ② <u>농업법인의 부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u> 1. ~ 5. (현행과 같음) 6. <u>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u> ③ <u>어업법인의 주된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u> 1. <u>어업·양식업의 경영</u> 2. <u>수산물의 공동 출하·유통·가공 및 수</u></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시행 예정		<p><u>출</u></p> <p>3. <u>어작업의 대행</u></p> <p>4. 「<u>농어촌정비법</u>」 제2조 제1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u>농어촌 관광휴양사업</u></p> <p>④ <u>어업법인의 부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u></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어업과 관련된 공동 이용시설의 설치·운영</u></p> <p>6. 「<u>낙시 관리 및 육성법</u>」 제2조 제4호에 따른 <u>낙시터업</u></p> <p>7. 「<u>수산업법</u>」 제65조에 따른 <u>유어장 운영</u></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 예정	현 행	개 정 안	현 행	개 정 안	
	<p>제20조(정관례의 작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u>농업회 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 인의 효율적인 설립을 위 하여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의 정관례를 정하고 이를 정관 작성의 기준으로 이용할 것을 권 장할 수 있다.</u></p>	<p><u>업(단, 영어조합법인 만 해당된다.)</u> 8. 「어촌·어항법」 제2 <u>조제10호에 따른 어촌어항재생사업 (단, 영어조합법인 만 해당된다.)</u> 제20조(정관례의 작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u>농업법 인 또는 어업법인의 효율 적인 설립을 위하여 농업 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정 관례를 정하고 이를 정관 작성의 기준으로 이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u></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p>시행 예정</p>				
<p>제20조의2(실태조사) ① 주된 사무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적법한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조사주기·방법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p>			<p><u><신 설></u></p>	<p><u>제14조의5(실태조사의 주기 및 방법 등) ① 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른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운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1년마다 실시한다.</u></p> <p><u>②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조사기간, 대상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u></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p>대하여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운영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p> <p>1. 조합원(준조합원을 포함한다) 또는 사원이나 주주의 인적 사항, 주소 및 출자 현황</p> <p>2. 사업범위와 관련된 사항</p> <p>3. 소유한 농지의 규모 및 경작유무 등 현황</p> <p>② ~ ⑤ (생략)</p>				<p>여야 한다.</p> <p>③ 실태조사는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한다.</p> <p>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0조의2 제5항에 따라 제공된 자료를 실태조사에 활용하여야 한다.</p> <p>⑤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실태조사를 보완하거나 특정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추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 예정	현 행	개 정 안	현 행
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자료 제공을 위하여 법인등기전산정보, 과세정보, 부동산거래신고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에 대해 해당 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에 그 정보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신 설>	<p><u>제20조의2(실태조사</u> <u>의</u> <u>요청자료) 법 제20조의2</u> <u>제6항에서 “대통령령으</u> <u>로 정하는 정보”란 다</u> <u>음 각 호의 정보를 말</u> <u>한다.</u></p> <p>1. 「<u>상업등기법</u>」 제21조 제2항에 따른 농업법 인 또는 어업법인의 등기전산정보자료</p> <p>2. 「<u>부동산 거래신고 등</u> <u>에 관한 법률</u>」 제24 조 제1항에 따라 관 리하는 <u>부동산정책</u> <u>관련 자료</u></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p>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p> <p>⑦ (생략)</p> <p>⑧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p>	<p><u>제20조의2(시정기간)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의 경우 특별자치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u> 법 제20조의2 제5항 각 호에 대하여 6개월 이내에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p>	<p><u>제20조의3(시정기간) 시장·군수·구청장은</u> 법 제20조의2 제8항 각 호에 대하여 6개월 이내에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 예정	현 행	현 행	개 정 안
<p>⑨ ~ ⑩ (생 략) 제20조의4(과징금) ① 제19조의5를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1.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하여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p>	<p>는 한 차례만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 설></p>	<p>제20조의4(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① 법 제20조의4 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p>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한 경우</p> <p>2.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하여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경우</p> <p>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기준은 다음 각</p>		<p>② <u>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0조의4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u></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p>호와 같다.</p> <p>1. 제1항제1호의 경우: 해당 농지의 양도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p> <p>2. 제1항제2호의 경우: 임대료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p> <p>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해당 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p>		<p><u>하려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어 이를 납부할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u></p> <p>③ <u>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안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u></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p>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p> <p>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필</p>		<p><u>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7일 안에 납부하여야 한다.</u></p> <p>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이 납부된 사실을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과징금의 부과 및</p>	제19조	<p>제19조(과징금의 납부 통지 및 관리) ① 영 제20조의4 제5항에 따른 과징</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p><u>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u></p> <p>[별표 2] 과징금의 부과 기준(제20조의4 관련)</p> <p>1. 일반기준</p> <p>가. <u>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획득한 이익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u></p>	<p><u>금의 납부 통지는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다.</u></p> <p>② <u>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0조의5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u></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 예정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table border="1"> <thead> <tr> <th>위반행위</th> <th>근거법조문</th> <th>과징금의금액</th> </tr> </thead> <tbody> <tr> <td>가.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하여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 개발 및 공업영위한 경우</td> <td>법 제 20조의 4 제1항 제1호</td> <td>해당 농지의 양도차액에 상당하는 금액</td> </tr> <tr> <td>나. 농지를</td> <td>법 제 20조의</td> <td>임대료에 상</td> </tr> </tbody> </table>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징금의금액	가.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하여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 개발 및 공업영위한 경우	법 제 20조의 4 제1항 제1호	해당 농지의 양도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나. 농지를	법 제 20조의	임대료에 상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징금의금액												
가.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하여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 개발 및 공업영위한 경우	법 제 20조의 4 제1항 제1호	해당 농지의 양도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나. 농지를	법 제 20조의	임대료에 상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 예정	현 행	개 정 안	현 행	개 정 안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3%; padding: 5px;"> <p>활 용 또 는 전용하 여 「통 계 법」 제 22 조 제 1 항 에 따 라 통 계 청 장 이 고 시 하는 한 국 표 준 산 업 분 류 에 의 한 부 동 산 임 대 업 을 영 위 한 경 우</p> </td> <td style="width: 33%;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p>4 제1 항 제1 호</p> </td> <td style="width: 33%;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p>당 하는 금 액</p> </td> </tr> <tr> <td colspan="3" style="padding: 5px;"> <p>비고: 1. 농지의 양도차액 에 상당하는 금액이 란 농지 취득 시와 양도 시에 각 실거래 가격의 차액을 말한 다. 다만 농지의 지 분을 양도한 경우, 그 지분에 대한 취득</p> </td> </tr> </table>	<p>활 용 또 는 전용하 여 「통 계 법」 제 22 조 제 1 항 에 따 라 통 계 청 장 이 고 시 하는 한 국 표 준 산 업 분 류 에 의 한 부 동 산 임 대 업 을 영 위 한 경 우</p>	<p>4 제1 항 제1 호</p>	<p>당 하는 금 액</p>	<p>비고: 1. 농지의 양도차액 에 상당하는 금액이 란 농지 취득 시와 양도 시에 각 실거래 가격의 차액을 말한 다. 다만 농지의 지 분을 양도한 경우, 그 지분에 대한 취득</p>				
<p>활 용 또 는 전용하 여 「통 계 법」 제 22 조 제 1 항 에 따 라 통 계 청 장 이 고 시 하는 한 국 표 준 산 업 분 류 에 의 한 부 동 산 임 대 업 을 영 위 한 경 우</p>	<p>4 제1 항 제1 호</p>	<p>당 하는 금 액</p>								
<p>비고: 1. 농지의 양도차액 에 상당하는 금액이 란 농지 취득 시와 양도 시에 각 실거래 가격의 차액을 말한 다. 다만 농지의 지 분을 양도한 경우, 그 지분에 대한 취득</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시행 예정		<p>시 실거래가격은 해당 농지 취득 시의 실거래가격 총액에 양도가 이루어진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취득 과정에서 복수의 지분 거래가 있었을 경우, 해당 위반행위자가 먼저 취득한 지분부터 양도한 것으로 본다.</p> <p>2. 임대료에 상당하는 금액이란 농지임차인이 위반행위자에게 농지의 사용 및 수익을 위하여 지급한 금액을 말한다.</p> <p>2. 개별기준 <1안> 가.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9조의5를 위반하여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한</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시행 예정		<p><u>농업법인에 대하여 해당 법인이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대상이 된 농지를 1년 이상 농업경영에 이용한 경우, 그 기간 동안 발생한 정상지가상승분을 고려해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u></p> <p><u>나. 가목에 따른 정상지가상승분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대상이 된 농지의 보유기간 각 연도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하여 산정하며, 각 연도의 정상지가상승분은 해당 연도 1월 1일 현재의</u></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시행 예정		<p><u>지가에 해당 연도의 정상지가변동률을 곱하여 산정한다.</u></p> <p><u>다. 연도 중에 보유 개시 시점 또는 보유 종료 시점이 속한 경우에는 월별 정상지가상승분(각 월의 정상지가상승분은 해당 월 1일 현재의 지가에 그 월의 정상지가변동률을 곱하여 산정한다)을 합하여 산정한 금액을 그 농업경영 기간 중의 정상지가상승분으로 하되, 월 중 일부 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은 그 월의 정</u></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 예정	현 행	개 정 안	현 행	개 정 안
		<p><u>상지가상승분을 일 단 위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u></p> <p><u>라. 나목에 따른 각 연도의 정상지가상승분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의 정상지가변동률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한 연도별 또는 월별 평균지가변동률(해당 농지가 속하는 시·군 또는 자치구의 평균지가변동율을 말한다)로</u></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시행 예정		<p>한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각 연도의 정상지가상 승분 = 매년 1월 1일 현재의 공시지가 × 해 당 연도(월)의 정상지 가변동률(「부동산 거 래신고 등에 관한 법 률」 제19조에 따라 국 토교통부장관이 조사 한 연도별 또는 월별 평균지가변동률)</p> </div> <p><2안> 가. 시장·군수·구청장 은 법 제19조의5를 위반하여 부동산 개 발 및 공급업을 영위 한 농업법인에 대하 여 농지법 제2조 제4</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시행 예정		<p><u>호에 따른 농업경영의 기간에 각 감경비율을 곱한 액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u></p> <table border="1"> <thead> <tr> <th>농업경영의 기간</th> <th>감경비율</th> </tr> </thead> <tbody> <tr> <td><u>3년 이상 4년 미만</u></td> <td><u>100분의 10</u></td> </tr> <tr> <td><u>4년 이상 5년 미만</u></td> <td><u>100분의 15</u></td> </tr> <tr> <td><u>5년 이상 6년 미만</u></td> <td><u>100분의 20</u></td> </tr> <tr> <td><u>6년 이상 7년 미만</u></td> <td><u>100분의 25</u></td> </tr> <tr> <td><u>7년 이상 8년 미만</u></td> <td><u>100분의 30</u></td> </tr> <tr> <td><u>8년 이상 9년 미만</u></td> <td><u>100분의 35</u></td> </tr> <tr> <td><u>9년 이상 10년 미만</u></td> <td><u>100분의 40</u></td> </tr> <tr> <td><u>10년 이상 11년 미만</u></td> <td><u>100분의 45</u></td> </tr> <tr> <td><u>11년 이상</u></td> <td><u>100분의 50</u></td> </tr> </tbody> </table>	농업경영의 기간	감경비율	<u>3년 이상 4년 미만</u>	<u>100분의 10</u>	<u>4년 이상 5년 미만</u>	<u>100분의 15</u>	<u>5년 이상 6년 미만</u>	<u>100분의 20</u>	<u>6년 이상 7년 미만</u>	<u>100분의 25</u>	<u>7년 이상 8년 미만</u>	<u>100분의 30</u>	<u>8년 이상 9년 미만</u>	<u>100분의 35</u>	<u>9년 이상 10년 미만</u>	<u>100분의 40</u>	<u>10년 이상 11년 미만</u>	<u>100분의 45</u>	<u>11년 이상</u>	<u>100분의 50</u>		
농업경영의 기간	감경비율																							
<u>3년 이상 4년 미만</u>	<u>100분의 10</u>																							
<u>4년 이상 5년 미만</u>	<u>100분의 15</u>																							
<u>5년 이상 6년 미만</u>	<u>100분의 20</u>																							
<u>6년 이상 7년 미만</u>	<u>100분의 25</u>																							
<u>7년 이상 8년 미만</u>	<u>100분의 30</u>																							
<u>8년 이상 9년 미만</u>	<u>100분의 35</u>																							
<u>9년 이상 10년 미만</u>	<u>100분의 40</u>																							
<u>10년 이상 11년 미만</u>	<u>100분의 45</u>																							
<u>11년 이상</u>	<u>100분의 50</u>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20조의5(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① ~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신설></u>	제20조의5(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의5 제3항에 따라 전문성 있는 기관이 종합정보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0조의5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 예정	현행	개정안	현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신고와 관련된 사항 2. 법 제16조의2 및 제19조의2에 따른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신고확인증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법 제20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 및 시정명령에 관련된 사항 4. 법 제20조의3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의 해산 청구와 관련된 사항 5. 법 제20조의4에 따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 예정	현행	개정안	현행
제33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제20조의3(대상 정보의 범위) (생략)	른 과징금 부과 및 징수와 관련된 사항 6. 농업법인의 농지 소유와 관련된 사항 7. 그 밖에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설립·운영 현황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제20조의6(대상 정보의 범위) (현행과 같음)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에 불응하거나 조사를 방해한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2. 제20조의2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2회 이상 불응한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 예정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p>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각각 부과·징수한다.</p> <p>1. ~ 2. (생략)</p>	<p>(생략)</p> <p>[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3조 관련)</p> <p>1. 일반기준 가. ~ 나. (생략)</p> <p>2. 개별기준</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위반행위</th> <th rowspan="2">근거법조문</th> <th colspan="3">과태료 금액</th> </tr> <tr> <th>1회</th> <th>2회</th> <th>3회 이상 위반</th> </tr> </thead> <tbody> <tr> <td>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4조에 따른</td> <td>제33조 제1항 제1호</td> <td>2만 원</td> <td>5만 원</td> <td>50만 원</td> </tr> </tbody> </table>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4조에 따른	제33조 제1항 제1호	2만 원	5만 원	50만 원	<p>(현행과 같음)</p> <p>[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3조 관련)</p> <p>1. 일반기준 가. ~ 나. (현행과 같음)</p> <p>2. 개별기준</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위반행위</th> <th rowspan="2">근거법조문</th> <th colspan="3">과태료 금액</th> </tr> <tr> <th>1회</th> <th>2회</th> <th>3회 이상 위반</th> </tr> </thead> <tbody> <tr> <td>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4조에 따른</td> <td>제33조 제1항 제1호</td> <td>2만 원</td> <td>5만 원</td> <td>100만 원</td> </tr> </tbody> </table>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4조에 따른	제33조 제1항 제1호	2만 원	5만 원	100만 원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4조에 따른	제33조 제1항 제1호	2만 원	5만 원	50만 원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4조에 따른	제33조 제1항 제1호	2만 원	5만 원	100만 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 예정					시행 예정																			
	현 행					개 정 안					현 행					개 정 안									
	농	어				농	어																		
	업	경				업	경																		
	영	정				영	정																		
	보	를				보	를																		
	등	록				등	록																		
	하	거				하	거																		
	나	변				나	변																		
	경	등				경	등																		
	록	한				록	한																		
	한	경				한	경																		
	우					우																			
	나.	법	제	2	5	나.	법	제	2	5															
	5	조	33	조	0	5	조	33	조	0															
	제	2	항	제	1	제	2	항	제	1															
	의	현	제	2	호	의	현	제	2	호															
	지	조				지	조																		
	사	를				사	를																		
	정	당				정	당																		
	한	사				한	사																		
	유	없				유	없																		
	이	거				이	거																		
	부	·				부	·																		
	기	피				기	피																		
	또	는				또	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 예정		현 행		개 정 안			현 행		개 정 안		
	방해한 경우					· 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다. 법 제 16 조 제 5 항 및 제 19 조 제 5 항에 따라 설립 등 기 또는 변경 등 기 후 30 일 이내 시 장 · 군 수	법 제 33 조 제 1 항 제 4 호	1 만 원	2 만 5 천 원	5 만 원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 예정			현 행			개 정 안			현 행			개 정 안		
	· 구 청 장 에 설 립 등 기 또 는 변 경 등 기 사 실 을 통 지 하 지 않 은 경우														
	라. 법 제 20 조의 제 1 항 부 터 제 3 항 까 지 의 규 정 에 따 른 조 사	법 제 33 조 제 2 항 제 1 호	100 만 원	200 만 원	300 만 원	다. 법 제 20 조의 제 1 항 부 터 제 3 항 까 지 의 규 정 에 따 른 조 사	법 제 33 조 제 2 항 제 1 호	100 만 원	200 만 원	300 만 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 예정					현 행					개 정 안				
	에 불응하거나 조사를 방해한 경우	다. 벌 제 법	300	300	300	에 불응하거나 조사를 방해한 경우	라. 벌 제 법	300	300	300					
															20 조
	에 따른 시정명령에 회이 상 불응한 경우	다. 벌 제 법	2	5	5	0	100	다. 벌 제 법	2	5	5	0	100		
	반 하	30 조	제33조	제1항	제3호	만 원	만 원	만 원	제 30 조	제33조	제1항	제3호	만 원	만 원	만 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 예정	현 행			개 정 안			현 행	개 정 안
		여농 업법 인또 는어 업법 인이 아니 면서 영농 조합 법인, 어합 조합 법인, 농업 회사 법인 또는 어업 회사 법인 의명 칭이 나			하 여 농 업 법 인 또 는 어 업 법 이 아 니 면 서 영 농 조 합 법 인, 어 합 조 합 법 인, 농 업 회 사 법 인 또 는 어 업 회 사 법 인 의 명 칭 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 예정	현 행		개 정 안		현 행		개 정 안	
	와 유 사 한 명 칭 을 사 용 한 경우			나 이 와 유 사 한 명 칭 을 사 용 한 경우				